


박사학위논문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The image features a large, faint watermark of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logo in the background. The logo is circular, containing a stylized flame or leaf design in blue, green, and grey, with a purple 'J' shape on the right. The text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is written around the top half of the circle, and '제주대학교' is written around the bottom half. In the center of the logo, there is a smaller emblem with 'JEJU 1952' and a book icon.

제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정 태 성

2010년 2월

A Study on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Tax Payment Compliance of Local Tax

Jung, Tae-Sung

(Supervised by professor Kang, Hee-So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business
Administration

2010.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강 희 수

정 태 성

이 논문을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2월

정태성의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부 위 원 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0년 2월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동기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4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7
제1절 지방세의 구조 및 부과징수현황	7
제2절 지방세 부과징수제도	14
제3절 납세순응에 대한 이론적 고찰	33
제4절 선행 연구	38
1. 제도적인 요인과 납세순응	39
2. 개인적인 요인과 납세순응	52
3.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및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62
제3장 가설설정 및 연구방법	64
제1절 가설설정	64
1. 지방세 납부방식과 납세순응	65
2. 지방세 신고납부세목과 납세순응	66
3. 납세자의 특성과 납세순응	68

제2절 연구방법-----	71
제4장 실증분석 및 결과 -----	78
제1절 기술통계-----	78
제2절 가설검정-----	80
1. 지방세 납부방식과 납세순응-----	80
2. 지방세 신고납부세목과 납세순응-----	84
3. 납세자의 특성과 납세순응-----	89
4. 가설검정 결과 요약-----	93
제5장 결 론-----	95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95
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97
제3절 연구한계 및 연구과제-----	100
【참고문헌】 -----	101

표 목 차

〈표 2-1〉 지방세 구조 -----	8
〈표 2-2〉 2008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	10
〈표 2-3〉 세목별·연도별 체납액 현황 -----	11
〈표 2-4〉 세목별·사유별 체납액 현황 -----	12
〈표 2-5〉 세목별·사유별 결손처분 현황 -----	13
〈표 2-6〉 취득세 과세대상별 세율 -----	19
〈표 2-7〉 부동산 등기관련 등록세 세율 -----	20
〈표 2-8〉 선박관련 등록세 세율 -----	21
〈표 2-9〉 자동차 관련 등록세 세율 -----	22
〈표 2-10〉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23
〈표 2-11〉 법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	23
〈표 2-12〉 소득할 주민세 세율 -----	24
〈표 2-13〉 재산세 세율 -----	27
〈표 2-14〉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	29
〈표 2-15〉 기타소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	29
〈표 2-16〉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	29
〈표 2-17〉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	30
〈표 2-18〉 종목별 면허세 세율 -----	31
〈표 2-19〉 지방세 세목별 과세대상 및 납부기간 -----	32
〈표 2-20〉 제도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요약 -----	50
〈표 2-21〉 개인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요약 -----	58
〈표 3-1〉 지방세의 세목 및 선정 세목 -----	75
〈표 3-2〉 주요 지방세 세목별 납세인원 -----	76
〈표 3-3〉 신고납부 및 부과지별 현황 -----	77

〈표 3-4〉 연령·성별·거주지별 및 세액별 현황-----	77
〈표 4-1〉 나이 기술 통계-----	78
〈표 4-2〉 납부 및 미납별 세목별 세액 통계 -----	79
〈표 4-3〉 거주지별 신고납부와 부과고지에 대한 세액 통계 -----	79
〈표 4-4〉 성별에 따른 세액 통계 -----	80
〈표 4-5〉 납부방식에 따른 가설 1 검정 -----	81
〈표 4-6〉 납부방식에 따른 가설 1 추가검정 -----	82
〈표 4-7〉 신고납부 세목별 납세순응도 차이에 따른 가설2 검정 -----	85
〈표 4-8〉 2008년 취득세 과세대상별 신고납부율 -----	86
〈표 4-9〉 납세자의 특성에 따른 가설 3 검정-----	92
〈표 4-10〉 가설검정 결과 요약 -----	94

그림 목차

〈그림 2-1〉 지방세의 순응에 관한 재무모델 -----	33
〈그림 2-2〉 납세자 순응에 관한 확장모델 -----	34

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Tax Payment Compliance of Local Tax

Jung, Tae-Sung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Although the Local government can exercise its autonomous right, such privilege is meaningless if it fails to handle the finances necessary in addressing various affairs. In this extent, financial security is the essential condition for the successful administration of a Local gover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ise a measure to secure the Local tax without inducing the tax-related burden to the taxpayers. In view of such issue, this study has made an empirical analysis for the factors that are influential to the compliance of the Local tax payment, and the result derived from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difference in the tax compliance in terms of the payment methods of Local tax including the report payment system and taxation notice system, the report payment system was revealed to be higher than the taxation notice system in terms of tax compliance. Such result indicates that tax-bearing capacity and items of penalty were served to vary the degree of tax compliance.

Second,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difference in the tax compliance between the local tax items, the tax compliance was revealed to be different

registration tax, acquisition tax, and resident tax in order. Considering such result, it seem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x item were different although they were the same tax items to be reported.

Third and lastly,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difference in the tax compliance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xpayers (Amount of tax, age, and residence), the tax compliance was revealed to be higher as the amount of tax was high and as the taxpayers were old, female citizens who lived in Jeju Island.

Based on the results derived, the measures to increase the tax compliance were suggested.

First, in terms of the notified tax item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easures to transfer the system to the report payment system or to adopt the prepayment system for the tax items that are unable to apply the report payment system. Since the prepayment system requires advance tax payment, therefore, the method for tax deduction needs to be settled first.

Second, the tax compliance can be increased by transferring the registration tax for the overlapped tax items since the tax on acquisition and that of registration are overlapped in most cases. Similarly, it is suggested to have the system that requires the payment of acquisition tax before registration. The local consumption tax that is to be executed from 2010 is a system that allows the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to issue the receipt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when taking VAT for the government. Likewise, it suggests the method to issue the tax payment receipt through the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for the collection of the resident tax that is designed to be collected en block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limitation and assignment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the aspect of data use. Since the data collection was made in Jeju Special Self-Government Province. It is suggested for future studies to use the actual nationwide data related to tax imposition.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동기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은 지방자치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방정부가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감당할 수 없으면 이러한 권리와 사무가 별 소용이 없게 된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어야 건전한 지방자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주재원확충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자주재원 중 제도적으로 지방세를 확충하는 방법에는 탄력세율 조정, 비과세 및 감면 축소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탄력세율은 지방정부가 지방세법의 범위안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써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범으로 인하여 세율 증가 정책은 민선자치단체의 장이 입지를 매우 낮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세율인상을 통해서 지방세수를 확충하려는 정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납세자가 소수일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²⁾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정책은 정부나 국회가 제출한 지방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을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감면을 축소하려고 해도 제도적으로 할 수 없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세정의³⁾와 세수확충을 위해서 ‘체납세 강력징수’라는

- 1) 자주재원은 지방정부가 그 자체의 재원으로부터 자주적으로 거둬들이는 수입을 말하고, 의존재원은 중앙정부나 상급지방정부 등 외부로부터 받는 자금을 말한다. 자주재원은 크게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되고, 의존재원은 교부금과 국고 보조금 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주재원중 지방세에 대해서 연구한다.
- 2) 제주도에서는 납세자 5명이내인 지역개발세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높게 적용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나 탄력세율로 인한 세수증대효과는 1억원미만으로, 탄력세율을 높혀서 세수를 확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산하 구청에서는 납세자의 민원 해소를 위해 재산세의 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등 납세자의 저항을 고려하여 탄력세율을 높게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 3) 조세정의는 과세권자 측면에서는 공평과세, 형평과세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고, 납세자 측면에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슬로건 아래 지방세법에서 정한 제재를 모두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에 온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재산이 이미 매각된 후에 부동산 압류 등을 하고 있어 실익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⁴⁾ 또한 취득한 부동산이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으므로 체납액은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지만 과세권자는 체납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납세순응을 하지 아니하는 납세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국회의 국정감사 또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시 체납액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지도 못하고, 체납액 징수도 되지 아니하므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7년도 제주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시에는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위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재산을 매각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 제도가 갖고 있는 모순점을 해결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조세는 1988년도의 조세는 225,842억원으로 국세는 86.3%에 해당되는 194,842억원, 지방세는 31,000억원으로 13.7%이며, 20년이 경과한 2008년도에는 조세수입이 2,127,857억원으로 국세는 78.6%에 해당되는 1,673,060억원, 지방세는 454,797억원으로 21.4%에 해당된다. 20년동안 조세의 변화추이를 보면 국세는 858.6%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세는 1,467.1%가 증가하였다.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은 1988년도는 269억원이었으나 20년이 경과한 2008년도는 1,690.4%가 증가한 4,547억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의 비중이 증가하고 지방세수입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래 지방세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에 비해 지방세에 대한 연구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세에 대한 선행연구도 조세회피요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4) 납세자는 조세회피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기한 후 곧 매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나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부과지 방식으로 15일 이내에 납기를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납세자가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과세권자는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고, 납세자는 독촉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비로소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취득일부터 압류일까지는 적어도 90일이상이 소요되므로 과세권자가 압류할 때에는 당해 부동산이 저당권 등 설정으로 후순위에 해당되어 경매나 공매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납세자가 재산을 매각하여 무재산이 되는 경우도 있어 납세보전을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

왔고, 납세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납세순응에 대한 연구는 자료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연구가 미약하다.

따라서 조세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국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지방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지방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지방자치시대를 만들어 가는 주요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또한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납세자가 납세순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민선자치단체의 장이 출범한지 14여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문제는 국정감사 또는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할 때에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확충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납세순응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지방세 납세자가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신고납부제도, 신고납부세목에 따라 세목특성, 납세자의 특성 즉 세액, 성별, 나이, 거주지등이 있다.

납세자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세 납세제도는 징세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징수금을 확대하는 제도로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에 불순응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와 가산금이라는 재정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납세순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납부제도가 징수편의를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연구함으로써 징수금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할 수 있다.

2008년도 전국지방세 결산현황에 의하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손처분하거나 미수액은 부과액(497,315억원) 대비 8.6%인 42,519억원이다. 위 금액은 결산서에 의한 자료이므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과

세관청에서 징수활동을 하여 징수한 금액을 제외하면 납세 불순응 비율이 20~30%에 달할 것으로 추정⁵⁾된다. 따라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납부기한내에 성실하게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통해서 징수한 것은 부과액 대비 10%내외이므로 과세관청의 징수활동은 징세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으므로 징세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납세순응을 제고 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한다.

지방세는 16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목마다 납세방법 등 각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납세순응도 각각 다를 것이다. 세목마다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연구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세수 확충은 물론 납세 불순응 하는 납세자를 납세순응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서 신고납부제도에 대한 장점을 부과지 세목에 적용함으로써 납기내에 납부율을 높일 수 있으며, 신고납부 세목 중에서 취득세에 대한 납세방법을 조정함으로써 매년 증가되고 있는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소득할 주민세도 국세와 함께 징수한다면 납세편의시책과 징세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방세에 대한 납세순응도가 제고되어 건전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납세순응과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한다.

첫째, 지방세 신고납부제도, 부과지제도에 따라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제안한다.

둘째, 신고납부 세목의 특성에 따라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납세순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셋째, 납세자의 특성이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제3절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이

5)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방세 자료중에서 납세순응(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이다)을 한 비율은 77.6%에 해당되며, 납세불순응 이후에 결산일까지 징수활동을 하여 납부한 징수율은 93.7%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평균 지방세 징수율이 비슷하므로 납세순응하지 아니한 비율은 전국적으로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 문헌을 수집하여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문헌에 대한 고찰은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논문, 전문서적, 정기 간행물, 연구 보고서, 지방세 통계자료 등을 국내외의 문헌을 중심으로 납세순응 또는 조세회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한 후 실제부과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2008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하나)에서 지방세 실제부과자료 중 통계분석이 가능한 신고납부세목 3개 세목(취득세, 등록세, 주민세)와 주요 부과고지세목 3개 세목(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총 6개의 세목에 대해서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이항 로지스틱 분석방법으로 통계처리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지방세의 구조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지며, 사용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어진다. 지방세 징수제도에 대한 개념을 기술한 후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제도에 대한 정의, 신고납부세목과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 세목별로 개념, 세율을 정리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크게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인 요인(세율, 적발확률, 가산세율 등)과 개인적인 요인(성별, 연령, 소득수준 등)으로 분류하여 기술하였으며 이를 요약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가설설정과 연구설계를 하였다. 가설은 지방세 납부방식(신고납부, 고지)과 납세순응, 지방세 신고납부세목(취득세·등록세·주민세)과 납세순응, 납세자의 특성(세액·성별·나이·거주지)과 납세순응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설별로 모형을 설계하였으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처리로는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이용하였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기술통계에 대한 분석을 한 후 가설별로 분석을 하였으며, 가설검정 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지방세 납부방식과 납세순응에 대한 검정결과는 신고납부제도가 부과고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신고납부 세목간에는 등록세가 취득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고, 취득세는 주민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의 특성과 납세순응도에 대한 결과는 세액이 높을수록, 여자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납세자 거주지역에 제주도내일수록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은 결론부분으로서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한 후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정책 제언을 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제언으로는 납세자의 협력을 얻어 징세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징수금을 극대화하는 신고납부제도가 부과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부과지세목에 대해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거나 세목특성상 신고납부제도로 도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신고제도를 도입하면 납세순응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신고납부세목이라 하더라도 신고납부세목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납세순응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취득세인 경우에는 등록세와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등록세로 전환하거나 또는 등기나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개선하게 되면 납세순응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소득할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두 기관에서 징수 할 것이 아니라 납세편의와 납부율 제고를 위해서 국가에서 이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는 방안을 제언한다는 내용과 연구의 한계와 연구과제를 기술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에 대한 구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제도의 개념과 종류를 살펴본 후 납세순응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제도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지방세의 구조 및 부과 징수현황

1. 지방세의 구조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는 1909년 일제의 의해 작성된 「지방비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수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해방이후 3년간의 군정기 동안에는 일제의 지방세제가 그대로 답습되었다(한재명의, 2006, p.17)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는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다음해인 1949년에 「지방세법」이 정비됨으로써 독자적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나 6.25전쟁으로 인해 지방세가 정착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가 1961년에야 지방세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재의 지방세법은 1961년도에 개정된 법을 토대로 하여 모두 38차례의 부분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지방세의 구조변화 및 지방세목의 개칭을 가졌은 개정은 14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지방세 구조의 변화 및 지방세목의 개칭이 외의 소폭의 개정은 24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표 2-1>의 세목체계는 2009년 현재의 세목을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하고 그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을 요약한 것이다. <표 2-1>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는 크게 도세와 시군세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세에서 도세와 시군세 및 시세(특별·광역시)와 구세로 구분하는 것은 조세법학이나 학술적인 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재원의 효율적 배분측면에서 각 세목의 세입실태와 자치단체별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인위적으로 구분한 것이다(전동훈, 2008, p.9).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 7개의 세목이 있으며, 시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9개의 세목으로 전체적으로 지방세 세목은 16개의 세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부터 기존 2개시, 2개군을 2개시로 통폐합하면서 2개시를 행정시로 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됨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 구분이 없이 전부 도세로 전환되었다. 보통세는 일반재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목적세는 특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용도에 관계없이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2-1〉 지방세의 구조

구 분	용도별	세목별	신고방식
도세	보통세	취득세	신고납부
		등록세	신고납부
		레저세	신고납부
		면허세	신고납부, 부과고지
	목적세	공동시설세	부과고지
		지역개발세	신고납부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부과고지	
시군세	보통세	주민세	신고납부, 부과고지
		재산세	부과고지
		자동차세	부과고지
		주행세	신고납부
		농업소득세	신고납부
		도축세	신고납부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목적세	도시계획세	부과고지
		사업소세	신고납부

주)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목에 대해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하고 이를 표로 작성

2.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현황

지방세는 신고납부세목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하면 납세의무 확정과 동시에 납세의무가 소멸되며, 만일 지방세법령에 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납세의무를 확정시켜 부과지하게 된다. 부과지 세목인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게 되고, 납세고지서상에 납기내에 납부를 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내 또는 납기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세권자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활동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 <표 2-2> 에서 나타나고 있는 징수액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부(신고납부 세목인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내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부과지 세목인 경우에는 납기내에 납부하는 경우를 뜻한다)하는 경우는 물론 체납활동을 통해서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납부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수치이다.⁶⁾

<표 2-2> 는 결산기준으로 2008년도에 제주도내에서 부과하고 징수한 결과이다. 부과액은 475,041,529천원이며, 징수액은 445,058,786천원, 불납결손액은 6,773,831천원, 미수액은 23,208,912천원이고, 징수율은 93.7%를 나타내고 있다.

레저세, 지역개발세, 담배소비세, 도축세는 주행세는 납부율이 100%이며, 등록세는 99.4%, 사업소세는 99.2%이며, 가장 징수율이 저조한 세목은 자동차세로써 91.2%이다.

여기에서 미수액 23,208,912천원은 다음연도인 2010년도에 이월된다. 이렇게 이월된 금액은 체납액을 누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체납액 누증은 세무행정력을 분산하는 결과로 이어져 효율적인 체납액 활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6) <표 2-2> 에서 보면 세목 모두가 징수율이 90%이상 되어 모두 성실하게 납부한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이 징수율은 한해동안 납부한 수치의 결과이다. 즉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체납활동을 통해서 징수한 금액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금액이 곧 성실하게 납부한 징수율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표 2-2〉 2008년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단위:천원, %)

구 분	세목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합 계		475,041,529	445,058,786 (93.68%)	6,773,831 (1.43%)	23,208,912 (4.89%)	93.7
현 년 도	소 계	451,155,707	439,438,988	1,014,641	10,702,078	97.4
	취득세	66,166,563	62,746,236	295,050	3,125,277	94.8
	등록세	55,680,617	55,365,299	4,590	310,728	99.4
	면허세	850,837	810,275	1,675	38,887	95.2
	레저세	41,414,372	41,414,372	0	0	100
	지역개발세	156,869	156,869	0	0	100
	공동시설세	5,181,241	4,971,144	41,631	168,466	95.9
	지방교육세	70,010,521	68,925,324	35,305	1,049,892	98.4
	주민세	47,350,958	45,539,288	425,953	1,385,717	96.2
	재산세	49,903,915	48,125,831	125,032	1,653,052	96.4
	자동차세	28,650,897	26,141,756	33,610	2,475,531	91.2
	농업소득세	0	0	0	0	0
	담배소비세	38,407,928	38,407,928	0	0	100
	도축세	1,394,261	1,394,261	0	0	100
	종합토지세	8,488	8,120	2	366	95.7
	주행세	27,886,753	27,886,753	0	0	100
	도시계획세	14,653,267	14,134,795	49,123	469,349	96.5
	사업소세	3,438,220	3,410,737	2,670	24,813	99.2
과년도	소 계	23,885,822	5,619,798	5,759,190	12,506,834	23.5

주) 2008년도 제주도 결산서 보조자료

〈표 2-2〉의 미수액 23,208,912천원은 다시 현년도와 과년도로 구분되며, 세목별로 체납액을 구분할 수 있다. 〈표 2-3〉에서 나타난 미수액 23,208,912천원중에서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6,878,816천원(체납액 비율 29.64%)으로 가장 비율이 높고, 자동차세는 5,522,731천원(체납액 비율 23.79%), 주민세는 3,441,091천원(체납액 비율 14.82%), 재산세는 2,966,605천원(체납액 비율 12.78%)순이다.

〈표 2-3〉 세목별·연도별 체납액 현황

(단위:천원)

구분	합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총괄	23,208,912	6,878,816	445,602	119,370	0
현년도분	10,702,078	3,125,277	310,728	38,887	0
과년도분	12,506,834	3,753,539	134,874	80,483	0
2007년도분	4,707,601	1,770,962	14,364	22,852	0
2006년도분	2,925,187	937,689	85,986	16,011	0
2005년도분	1,722,437	377,999	23,470	12,656	0
2004년도분	1,155,387	183,625	2,368	10,790	0
2003년이전	1,996,222	483,264	8,686	18,174	0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0	411,963	2,086,036	3,441,091	2,966,605	5,522,731	0
0	168,466	1,049,892	1,385,717	1,653,052	2,475,531	0
0	243,497	1,036,144	2,055,374	1,313,553	3,047,200	0
0	79,546	381,688	611,305	632,250	973,427	0
0	57,652	257,887	410,059	370,354	649,190	0
0	23,831	161,105	383,104	173,766	477,311	0
0	22,337	116,816	250,034	57,569	356,667	0
0	60,131	118,648	400,872	79,614	590,605	0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0	0	240,351	0	1,031,836	64,511
0	0	366	0	469,349	24,813
0	0	239,985	0	562,487	39,698
0	0	316	0	204,631	16,260
0	0	8,095	0	121,637	10,627
0	0	84	0	84,154	4,957
0	0	89,828	0	62,352	3,001
0	0	141,662	0	89,713	4,853

주) 2008년도 제주도 결산서 보조자료

지방세 체납액을 사유별로 보면 <표 2-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류중이 전체 체납액이 65.26%인 15,147,120천원이고, 무재산이 12.33%인 2,861,654천원, 고질체납자가 10.13%인 2,352,170천원이다. 압류중은 체납자가 재산은 있으나 과세권자가 압류를 하기 전에 이미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서 후순위로 압류된 것으로써 공매를 하여도 배당받을 수 없어서 우선 채권확보차원에서 압류하고 있다. 체납사유 중 기타는 일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로 기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체납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에 징수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2-4> 세목별·사유별 체납액 현황

(단위:천원)

구 분	금액	징수 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자	압류중	기타
계	23,208,912 (100%)	2,587 (0.01%)	1,683,863 (7.26%)	2,861,654 (12.33%)	2,352,170 (10.13%)	15,147,120 (65.26%)	1,161,518 (5.01%)
취 득 세	6,878,816 (29.64%)	0	791,925	248,296	481,278	4,713,021	644,296
등 록 세	445,602 (1.92%)	0	31,996	12,089	8,118	371,219	22,180
면 허 세	119,370 (0.51%)	0	13,387	24,493	28,816	50,334	2,340
공동시설세	411,963 (1.78%)	0	56,023	174,679	20,505	151,982	8,774
지방교육세	2,086,036 (8.99%)	353	50,664	362,467	123,587	1,465,902	83,063
주 민 세	3,441,091 (14.82%)	0	142,076	771,286	263,299	2,151,807	112,623
재 산 세	2,966,605 (12.78%)	1,768	165,938	162,554	227,389	2,223,940	185,016
자동차세	5,522,731 (23.79%)	0	305,125	952,563	990,236	3,200,651	74,156
종합토지세	240,351 (1.04%)	0	16,909	6,455	29,094	181,282	6,611
도시계획세	1,031,836 (4.45%)	466	96,885	142,726	169,526	601,386	20,847
사업 소세	64,511 (0.28%)	0	12,935	4,046	10,322	35,596	1,612

주) 2008년도 제주도 결산서 보조자료

2008년도 결손처분한 경우는 <표 2-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6,773,831천원으로써 부과액 대비 1.43%를 차지하고 있다. 결손처분 사유 중 무재산이 48.32%인 3,273,270천원으로 가장 비율이 높고, 압류는 하였으나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인하여 무배당으로 결손처분한 것이 1,104,007천원으로 전체 결손처분액중 16.30%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채납정리팀이 채납정리를 하려고 해도 지방세 부과징수 제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한 채납액 징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2-5> 세목별·사유별 결손처분 현황

(단위:천원)

구 분	금액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무배당	부도	기타
계	6,773,831 (100%)	3,273,270 (48.32%)	249,652 (3.69%)	358,214 (5.29%)	1,104,007 (16.30%)	806,668 (11.90%)	982,020 (14.50%)
취 득 세	1,995,053 (29.45%)	1,006,149	16,444	30,111	486,038	366,294	90,017
등 록 세	67,774 (1.00%)	55,630	203	676	6,889	9	4,367
면 허 세	32,301 (0.48%)	12,998	5,042	8,478	635	597	4,551
공동시설세	163,867 (2.42%)	35,005	3,626	6,615	60,668	26,468	31,485
지방교육세	359,262 (5.30%)	161,844	27,441	54,273	33,610	14,382	67,712
주 민 세	2,205,935 (32.57%)	1,266,724	73,446	114,401	203,701	300,511	247,152
재 산 세	507,890 (7.50%)	113,225	43,342	14,645	214,176	41,629	80,873
자동차세	1,022,493 (15.09%)	491,071	55,408	79,716	5,209	26,653	364,436
농업소득세	114 (0.00%)	0	0	0	114	0	0
종합토지세	144,483 (2.13%)	55,724	13,983	33,352	1,137	1,872	38,415
도시계획세	251,247 (3.71%)	70,517	10,531	14,373	87,125	22,090	46,611
사업소세	23,412 (0.35%)	4,383	186	1,574	4,705	6,163	6,401

주) 2008년도 제주도 결산서 보조자료

제2절 지방세 부과징수제도

1. 지방세 부과징수제도의 개념

지방세는 물론 국세도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의대로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헌법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조세관련 법률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때에 부과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에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수 없고,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부당이득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는 추상적 납세의무와 구체적 납세의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추상적 납세의무는 법률에 규정된 조세채권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성립한다. 납세의무의 확정은 추상적으로 발생한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납세의무의 성립은 조세채무가 발생하였을 뿐이고 발생한 채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납세자 중 일방이 과세요건 충족 여부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방법에는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제도가 있다.⁷⁾ 부과고지제도와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의무의 확정방법 즉 납세의무에 대한 확정권의 소재 또는 확정수단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부과고지 제도는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과세관청이 부여하고 있는 경우인데,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해서 비로소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자가 납부할 때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제도는 납세

7) 신고납부제도는 신고납부제도라고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신고납부제도란 용어를 사용하며, 부과고지제도는 부과과세제도라고도 하며 보통징수라고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부과고지제도란 용어로 사용한다.

의무의 확정권을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로 확정되며, 납세자가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조세의 궁극적인 목표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극소화하면서 징수액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때 부과고지제도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기 때문에 과세자료를 조사하고, 세액을 산출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부하는 등 납세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가 세율, 세액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과세관청에 입장에서 볼 때 부과고지제도보다 신고납부제도가 조세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신고납부제도는 미국에서 채용되어 온 방식이며, 납세자에 대한 고도의 윤리성과 세법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제도에 대해서 납세순응을 비교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보면 납세순응이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율, 발각확률, 제재 등이 있으나 지방세 납부방식에 따라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기존 연구는 없으므로 신고납부제도에 속하는 세목과 부과고지제도에 속하는 세목에 대한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지방세 부과징수제도의 구분 및 종류

지방세 부과징수제도는 세금을 납부할 때 과세권자 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납세자 기준으로 할 것으로 할 것인가 즉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납세의무의 확정권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를 신고납부제도라고 하고,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과세권자가 부여할 때 이를 부과고지제도라고 한다. 이에 대한 정의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신고납부 제도

(1) 정의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의 신고로 세액을 확정하는 법적 효과가 부여되어지는

자기부과(Self-assessment)로 정의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과세관청에 부여된 책무의 하나를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국민의 납세의무가 지배에 대한 복종이 아닌 스스로의 책임을 의미한다(최명근, 2006, p.378). 즉 납세의무의 확정권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경우로써 납세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의하여 구체적 납세의무로 전환하게 된다. 다만,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과세관청이 제2차적으로 과세권을 확정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신고납부제도는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채용되어 온 방식이며, 납세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자기부과제도라고도 한다. 이는 민주적 납세 방식에 적합하고 조세의 능률적 징세의 요청에 합치하지만, 한편으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도의 윤리성과 세법지식을 요구하고 있다(김완석, 2006, p.33).

신고납부 제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신고행위에 관한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사법행위설⁸⁾과 공법행위설⁹⁾로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인의 공법행위로 보고 있다. 즉 납세자의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이 신고에 의하여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에는 구체적인 조세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법률적 효과가 있는 신고는 사인의 사법상의 의사표시와 현저히 다른 법률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사법행위의 경우처럼 취소·무효·철회의 주장이 임의적이어서는 조세법률관계가 극히 불안정한 상태로 될 것이다. 따라서 공법관계에 있어서는 법적안정성과 법률관계의 명확성이 특별히 요청되는 것이므로 사법행위와 이를 다르게 구별하여야 한다.

조세행정의 궁극적 목적으로는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높임으로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극소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세개편을 한다거나 과세의 공정성, 세율체계의 단순화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 부과고지제도도 비록 과세관청이 납세의무를

8) 사법행위설은 신고납부제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의사의 존중에 기초를 두는 제도로서, 신고행위에 대해서 추상적 납세의무가 자발적으로 적정하게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법행위라고 한다.

9) 공법행위설은 조세법률관계와 같은 행정의 분야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신고와 같은 사인의 행위도 그 효과는 일반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익성이 있는 행위이고, 공법관계인 조세법률관계를 확인하여 확정하는 행위이므로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본다.

확정하지만 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해서 납세순응할 수 있도록 납부시스템 다양화함은 물론, 제도적으로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시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부과징수제도를 신고납부로 할 것인가 또는 부과고지로 할 것인가는 세목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러한 이유로 확정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부과고지 제도가 채용되고 있었으나 주로 징수편의의 요청에 따라 1947년 세제개정에서 소득세·법인세 등이 직접세에 대해서 신고납부제도로 채용되고, 이러한 제도는 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그 후 서서히 직접세뿐만 아니라 간접세나 관세에 대해서도, 또한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대해서도 조세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 지방세에 대해서도 신고납부 제도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전부터 부과고지 제도를 취해왔는데 최초로 신고주의가 도입된 것은 1976년 12월 22일 부가가치세제와 특별소비세제의 신설에서 비롯되었으며, 동시에 주세법이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였다. 그 후 1978년 12월 5일 신설된 증권거래세가 신고납부제도를 취했으며, 1979년 12월 28일 법인세가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었으며, 영국도 종래의 부과고지제도에서 부분적으로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1996과 1997년에 걸쳐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capital gain)에 대해 부과고지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김민훈, 1997, pp.12-13).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중 국세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통세등과 같은 대부분의 세목이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지방세인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레저세·주행세·담배소비세·지역개발세·사업소세 등이 신고납부세목이다. 여기에서는 지방세의 세목 중 주요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 그 개념, 과세대상, 세율, 납기에 대한 설명이다.

(2) 종류

① 취득세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이다.¹⁰⁾ 즉 취득세의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이전사실(취득행위)에 대하여

10) 취득세의 의미는 대법원판례(‘92누16843. 1993. 9.28 선고)에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과세하거나 가치증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써 세부적으로는 취득행위라는 행위사실 자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취득세의 시초는 1909년 4월 공포되어 동년 10월에 시행한 지방비법(地方費法)에서 부도령(府道令)으로 세목을 정하여 한성부에서만 시행한 토지·가옥소유권 취득세와 저당권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데 1926년 부동산 취득세로 명칭을 변경하고, 1952년 9월 26일에 부동산 취득세를 취득세로 명칭을 개칭하고 금고와 소형 선박을 과세대상에 추가하였으며,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11) 시(1974. 1. 14)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세율도 15%로 하였다. 비업무용토지는 2000년 말에 폐지하였고, 현재는 일반세율 취득가액의 2%, 중과세율은 10%를 적용하고 있다.

취득세 과세대상은 본래적 의미의 과세대상으로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 승마회원권이 있으며, 의제(擬制)하는 과세대상으로는 개수·선박, 차량 및 건설기계의 종류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등이 있다.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상속재산의 경우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내이며,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받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한 후 신고요건은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할 것과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받기 전이어야 한다. 취득자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고지하게 된다. 취득세를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¹²⁾가 있으며, 이 가산세를 추가하여 보통고지 방법으로 부과하게 된다. 취득세의 세율은 <표 2-6>에 보는 바와 같다.

11) 긴급조치는 제4공화국 헌법(유신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헌법적 효력을 가진 특별조치를 말한다. 원해 학문상으로 보면 비상조치·비상명령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긴급조치·긴급명령은 법률적 효력을 긴급조치라 하면서 그 내용은 비상조치·비상명령을 규정하였다.

12)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본세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 10,000분의3이다.

〈표 2-6〉 취득세 과세대상별 세율

구분	대 상	과세 표준	세 율	비고
일반대상	사치성재산과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을 제외한 모든 과세 대상	취득금액	20/1,000	
사치성재산	별장,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취득금액	100/1,000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다만, 공업배치 및 공장실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취득금액	60/1,000	

주) 지방세법 세율을 재구성

② 등록세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¹³⁾ 등록세는 그 등기·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또한 등기·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등기·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금이다.

등록세는 취득세와 함께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할 때에 부담해야 하는 주요한 세목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동일하지만 다를 경우도 있다.¹⁴⁾ 취득세는 2%, 6%, 10%을 그 과세물건에 따라 달리 적용하지만 등록세는 90여개에 이르는 차등비례세율을 적용한다.

등록세는 등기·등록 신청시에 세금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납하는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특징이 있지만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되기도 한다.

등록세의 시초는 1911년 회사령에 의거 회사가 등기할 때 국세로 부과한 회사

13) 대법원1986.2.25.선고 85누858판결 참조

14)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액이 취득세와 등록세는 동일하지만 취득시기와 등록시기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는 등록하는때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를 수 가 있다.

등록세이다. 그리고 1912년 3월에는 부동산 거래에도 등록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조선등록세령(朝鮮登錄稅令)이 공포되자 이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증명을 받을 때에는 부동산이나 채권의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국세로 부과되던 등록세는 1976년 세제 개혁 시 지방세로 이양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세율은 <표 2-7> 과 같다.

<표 2-7> 부동산 등기 관련 등록세 세율

권리별	등기 요인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비 고
1. 소유권	①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부동산가액	3/1,000	
		· 기타	"	8/1,000	
	②상속이외의 무상취득	· 일반	"	15/1,000	증여, 유증, 시효취득 등
		· 법제127조제1호제1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	"	8/1,000	제사, 종교, 자선등
	③전①②이외의 취득	· 농지	"	10/1,000	매매, 교환, 기타일체의 유상취득
		· 기타	"	20/1,000	
	④소유권 보존		"	"	8/1,000
⑤공유, 합유 및 유물의 분할		"	"	3/1,000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표 2-7〉 부동산 등기 관련 등록세율(계속)

2.지상권	설정 및 이전	부동산가액	2/1,000	
3.저당권	"	채권금액	2/1,000	담보가등기
4.지역권	"	요역지	2/1,000	
5.전세권	"	전세금액	2/1,000	
6.임차권	"	월임대차금액	2/1,000	
7가압류등		채권금액	2/1,000	경매신청,가처분포함
8.가등기		부동산가액	2/1,000	
9.상기이외의 등기		매1건당	3,000원	

주) 지방세법 세율을 재구성

선박관련 등록세에 대한 세율은 〈표 2-8〉 와 같다.

〈표 2-8〉 선박관련 등록세율

권리별	등기요인	과세표준	세율	비고
1. 소유권	①상속취득	선박 가액	5/1,000	
	②무상취득	선박 가액	10/1,000	증여·유증 등
	③소유권보존	선박 가액	0.2/1,000	
	④①~③이외의 취득	선박 가액	10/1,000	매매·교환 등
2. 기 타	⑤①내지④이외의 등기	매1건당	7,500원	

주) 지방세법 세율을 재구성

자동차 관련 등록세의 세율은 <표 2-9> 과 같다.

<표 2-9> 자동차 관련 등록세율

권리별	등록요건	과세표준	세율	비고
1. 소유권 (신규 및 이전)	①비영업용승용자동차 - 경형자동차	자동차가액 "	50/1,000 20/1,000	
	②비영업용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 · 비영업용 - 경형자동차 · 영업용	"	30/1,000	
		"	20/1,000 20/1,000	
2. 지당권 (설정)	①비영업용승용자동차	채권금액	2/1,000	
	②비영업용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 · 비영업용 · 영업용	" "	2 /1,000 2 /1,000	
3. 기타	신규·소유권 이전등록, 지당 권설정등록외의 등록	매1건당	7,500원	차량의 종류변경, 말소등록 등

주) 지방세법세율을 재구성

③ 주민세

주민세는 크게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로 구분되며, 주소를 중심으로 과세하는 균등할 주민세는 구성원에게 회비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이 가장 잘 구현된 세목이며, 소득할은 소득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로서 소득세액·법인세액·농업소득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주민세는 1973년 3월 12일 지방세법을 개정할 때에 신설된 세목이다. 당시의 주민세는 도세로 신설되었으며, 소득할 주민세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5%인 반면 기타 시도는 1%였다. 1976년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7.5%로 인상하였으며, 1996년 1월1일부터는 7.5%에서 10%로 인상하였다.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균등할은 인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으나 1999년도부터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만원 이내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서울은 <표 2-10> 과 같다.

<표 2-10>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구 분	세 액				
	'73-'76	'77-'79	'80-'93	'94-'98	'99년부터
인구 500만이상 시	400원	3,000원	4,000원	4,500원	1만원까지 조례위임
인수 50만이상 시	200원	1,500원	2,500원	3,000원	
자치구나연구설치된시	-			3,000원	
기타시	100원				
군	60원	800원	1,500원	1,800원	
개인사업자	-	-	40,000원	50,000원	50,000원

주) 각년도 지방세법에 의한 세율을 재구성

법인균등할은 자본금(또는 출자금)과 당해 종업원수에 따라 6단계의 세율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부적인 세율은 <표 2-11> 과 같다.

<표 2-11> 법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구 분	세 액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 기타법인	50,000원

주) 지방세법 세율을 재구성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은 <표 2-12> 과 같다.

<표 2-12> 소득할 주민세 세율

구 분	세 율	비 고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	
농업소득세할	농업소득세액의 10%	

주) 지방세법 세율을 재구성

2) 부과고지 제도

(1) 정의

납세의무는 특정한 지위·물건 또는 사실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충족한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 이와 같이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추상적 납세의무라고 한다. 추상적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같은 확정절차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에 대한 확정권의 소재 또는 확정수단에 따라 부과고지제도와 신고납부제도로 대별할 수가 있다. 부과고지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부과제도를 할 수 있는데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과세관청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된다.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때에는 납기한을 보통 15일기간을 두어 발송하게 되는데 납세의무자가 납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가산금을 본세에 추가하여 다시 독촉장을 발송하게 되고, 독촉장에서 정해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압류 등을 하여 청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부과고지 세목은 재산세·자동차세 등이며, 주민세·면허세 등은 신고납부와 부과고지 세목이 중복되고 있다

(2) 종류

① 재산세

재산세는 건축물·선박·항공기·토지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시군세로써 재산세의 연혁은 1961년까지 부과되던 지세·가옥세·광세·선세를 통합하여 재산세로 부과하였다. 종합토지세가 도입되기 이전인 1989년까지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1990년부터 2004년까지는 개인별로 전국에 토지를 모든 합산하여 시군별로 세액을 안분하는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었으며, 2005년도부터는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었으며, 종합토지세로 부과할 때의 최고세율은 5%였으나 토지에 대한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나누어 부과하게 되어 재산세의 최고세율은 5%에서 0.5%까지 인하되었으며, 재산세 감소분은 부동산 교부세로 보전하도록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었다.

재산세제에 정책세제가 도입된 것은 1970년대초 당시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에 따라 일부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서 얻은 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치성 재산을 증과세를 한 것이 시초이다.¹⁵⁾ 사치성 재산으로 증과세하는 과세대상은 별장·골프장·고급승용차 등이다. 그 후 1974년 1월 1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를 선포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데,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1조 제2항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치성 재산의 범위를 1974년 1월 14일 대통령령 제7042호로 공포하면서 다시 세율을 인상하였다.¹⁶⁾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납기로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와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하도록 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에 5만원이하에서는 7월에 일시에 부과하고 있다.¹⁷⁾

재산세에서는 다른 세목과 달리 세액상한제가 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15) 서울신문, 1973.3.5자 5면.

16) 대한민국 관보, 제6648호(그2) 1974. 1.14. p.492.

17) 제주도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여 주택 재산세액의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에 부과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 주택에 대하여 종전의 건물 원가방식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시가방식으로 일괄 평가함에 따라 세부담이 일시에 급등할 경우 납세자의 조세저항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세부담 인상폭을 제한토록 세부담 상한제(circuit breaker system)를 마련한 것이며 지방세법상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05까지,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는 대상세목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세부담상한제는 인상폭을 전년대비 세부담 수준을 비교하여 그 인상폭을 제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부담 상한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납부세액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어느 정도 인상되더라도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인근 주택과의 재산세 과세 불형평이 당분간 초래되기 때문에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는 신축 주택 등에 대하여는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직전년도의 재산세 납부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

1.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2.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 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다만, 주택의 경우 본문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전년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의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

재산세는 주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다른 과세대상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산세의 세율은 <표 2-13> 와 같다.

<표 2-13> 재산세의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 율
토 지	종합합산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분리과세	전·담·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위 이외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건 물	고급오락장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주 택	별장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주택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선 박	고급선박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일반선박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항 공 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		5배	

주) 지방세법 세율을 재구성

②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대기오염·도로손상 등에 대한 비용부담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방세이다.

자동차세는 국세로 되어 있던 것을 1961년 지방세로 이양하였으며, 당시의 승용차의 세액은 4기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축간거리 275cm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하였고, 4기통이하는 배기량별로 과세하였다. 1991년도부터는 기통수와축간거리를 폐지하고, 모두 배기량에 따라 세율을 정하였다. 1994년에는 연간 10만원 정액으로 과세하였던 쏘라에 대해서는 세율을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하였다. 1990년대 상반기부터 시작한 한·미 자동차 통상협상에 따라 대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1995년, 1998년 연이어 인하하게 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1999년도에는 증액교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주었고, 2000년부터는 주행세를 도입하여 조세로서 그 재정부족분을 교부하여 주고 있다.

자동차의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혼합물 운반차를 과세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과세표준은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이 되므로 종량세이고, 세율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액세이다. 자동차세는 1년간 세액을 두 번(6월, 12월)에 나누어 부과할 수 있는데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제1기분 부과시 전액을 부과할 수 있고,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연세액을 4번에 나누어 분납할 수도 있으며,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납세자가 원할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보유과세인 재산세인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즉 매년 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그 당해연도의 전체세액을 부과하지만 자동차세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납기월의 1일(제1기분은 6월1일, 제2기분은 12월1일)이지만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세액을 일할 계산하는데 소유자가 변경한 경우에는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하고, 신규등록이나 폐차등록인 경우에는 신규등록일, 폐차등록일이 기준이 되고, 비과세 자동차가 과세자동차가 되거나, 과세자동차가 비과세자동차가 되는 경우에도 그 기준일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게 된다. 세액은 자동차 총배기량에 시시별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승용자동차세에 대한 세율은 <표 2-14 > 와 같다.

<표 2-14>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cc당 세액	배 기 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8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10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이하	19원	2,000cc 이하	200원
2,500cc 초과	24원	2,000cc 초과	220원

주) 지방세법 세율을 재구성

기타 소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은 <표 2-15> 와 같다.

<표 2-15> 기타 소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구 분	세 율	비 고
영업용	연간 20,000원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전기·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비영업용	연간 100,000원	

주) 지방세법 세율을 재구성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은 <표 2-16 > 과 같다.

<표 2-16 >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구 분	세 율	비 고
고속버스(사업용 고속버스)	• 연간 100,000원	
소형 전세버스(정원 40인 이하 사업용 버스)	• 연간 50,000원	
대형 일반버스(정원 40인 초과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자가용, 마을버스)	• 영업용: 연간 42,000원 • 비영업용: 연간 115,000원	
소형 일반버스(정원 40인 이하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자가용, 마을버스운송등)	• 영 업 용 : 연간 25,000원 • 비영업용 : 연간 65,000원	

주) 지방세법 세율을 재구성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은 <표 2-17> 과 같다.

<표 2-17> 화물자동차등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구 분	세 율	비 고
화물자동차(영업용)	적재적량에 따라 연간 6,600원~45,000원	
화물자동차(비영업용)	적재적량에 따라 연간 28,500원~157,000원	
대형 특수자동차 (적재정량 4톤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업 용 : 연간 36,000원 • 비영업용 : 연간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적재정량 4톤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업 용 : 연간 13,500원 • 비영업용 : 연간 58,500원 	
3톤이하 소형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업 용 : 연간 3,300원 • 비영업용 : 연간 18,000원 	

주) 지방세법 세율을 재구성

③ 면허세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하여 면허세를 징수하는데 그 대상은 1종~5종으로 분류하여 지방세법시행령[별표]에 열거함으로써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을 때 신고납부하기도 하나 그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그 기간이 없는 면허는 매년 1월1일에 갱신되는 것으로 매년 1월달에 정기분으로 부과하고 있다. 면허세는 면허종별로 과세하는 것이다. 다만, 제조·가공업 또는 수입업의 면허로서 품목별로 면허를 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별개의 면허로 보아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품목마다 제5종에 해당하는 면허세를 부과하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면허세에 대한 세율은 <표 2-18> 와 같다.

〈표 2 -18〉 종목별 면허세 세율

구	분	인구50만이상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기 타 시	군
제 1	종	45,000원	30,000원	18,000원
제 2	종	36,000원	22,500원	12,000원
제 3	종	27,000원	15,000원	8,000원
제 4	종	18,000원	10,000원	6,000원
제 5	종	12,000원	5,000원	3,000원

주) 지방세법 세율을 재구성

위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지방세 세목중에는 레저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 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각 세목별 과세대상, 납세의무성립일, 신고납부일 및 세율은 〈표 2-19〉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19〉 지방세 세목별 과세대상 및 납부기간

세목	과세대상	납세의무성립일 (과세기준일)	신고납부일 (납기)	세율
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승마회원권	유상: 잔금지급일, 등기일중 빠른날 무상: 계약일 원시: 사용승인서교부일	취득일부터 30일이내	2% 중과세 10%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등)
등록세	재산권, 권리 취득이전 등 공부에 등기·등록하는때 (부동산, 선박, 자동차, 법인 등기등)	재산권·기타권리를 등기·등록하는때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종류마다 세율 다름
면허세	면허, 허가, 인가, 등록, 검사 등	각종 면허 받을때, 납기가 있는달의 1일	수시: 면허받을 때 정기: 1월	동(5~30천원) 읍면(3~18천원)
레저세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승자, 승마투표권 발매하는 때	다음날 10일	발매총액10%
공동시설세	건물, 주택, 선박	6월 1일	7월, 9월	0.05~0.13%
지역개발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 발전	지하수 채수하는때 컨테이너 입출항하는때	다음달 10일	음용수 200원 목욕수 100원 기타 20원
지방교육세	부가세(등록세등 6개세목)	각 세목별 성립하는때	세목별납기	10~60%
주민세	개인균등할, 법인균등할 소득할(법인세할, 소득세할)	균등할 : 8.1일 소득할: 소득세 등 납세의무성립하는때	균등할 8월 소득할	소득할 10%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6월 1일	7월, 9월	종류별로 세율 적용
자동차세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자동차와 유사한 것)	6월1일, 12월1일	6월, 12월	자동차종류별 세율적용
주행세	휘발유, 경유	교통세의 납세의무 성립하는때	교통세납부 기한	교통에너지환 경세의 26%
담배소비세	담배 (흡연용·씹는·냄새맡는)	제조담배를 제조장으 로 반출하는때	반출시 다음달 말일까지	담배별 적용 20개비당 641원
농업소득세	과수, 인삼 약용식물 등	과세기간이 종료되는때	익년5.31까지	3~40%, 4단계
도축세	소, 돼지	소, 돼지 도살하는때	익월5일까지	결정가의 1%
도시계획세	도시지역안 토지, 건축물, 주택	6월1일	7월, 9월	0.15%
사업소세	재산할 : 사업소 330㎡초과 종업원할 : 50인 초과	재산할 : 7월1일 종업원할 : 매월말	재산할 : 7월말 종업원: 익월0일	재산할 1㎡당 250원, 종업원 할금여총액 0.5%

주) 지방세법 과세대상 및 세율 등을 세목별로 연구자가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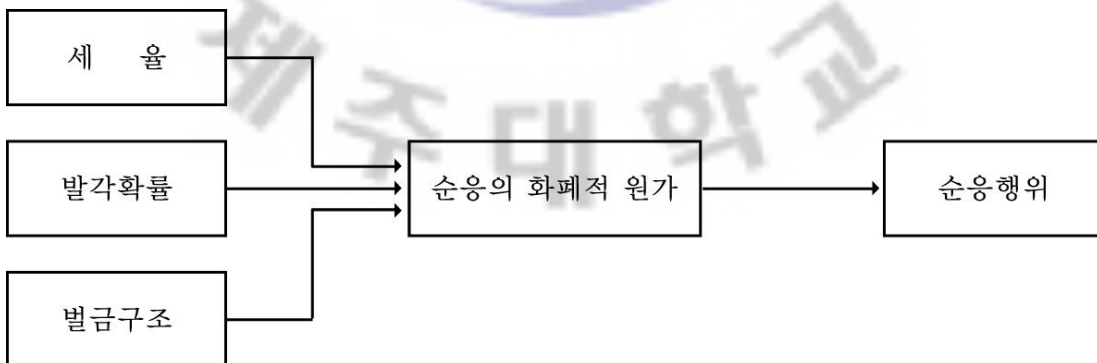
제3절 납세순응에 대한 이론적 고찰

납세순응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다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조세회피는 납세자가 세금을 과소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므로 납세순응을 하지 아니하면 조세회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납세순응과 조세회피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으로 납세순응이론을 고찰하면서 조세회피에 대한 이론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1. 납세순응 이론

납세자 순응 모델은 두 가지가 있다. 즉 재무중심 모델과 비경제적인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확장 모델이다. 납세자 순응에 관한 많은 연구는 Becker의 범죄경제학 접근법(1967)에서 유도된 재무중심모델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접근법은 개인들이 벌각과 벌칙의 위험과 성공적인 탈세의 불확실한 효익을 비교함으로써 탈세 투기의 기대효용을 최대화한다고 가정한다. 이 접근법은 효용함수도 고려하면서 잠재적인 탈세의 원가와 효익이 전형적으로 화폐액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추구하는 바는 기대순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그림 2-1>에서 보는 것과 같이 틀내에서 세율, 벌각확률, 벌금구조는 순응의 화폐적 원가를 결정하고 그것은 순응행위를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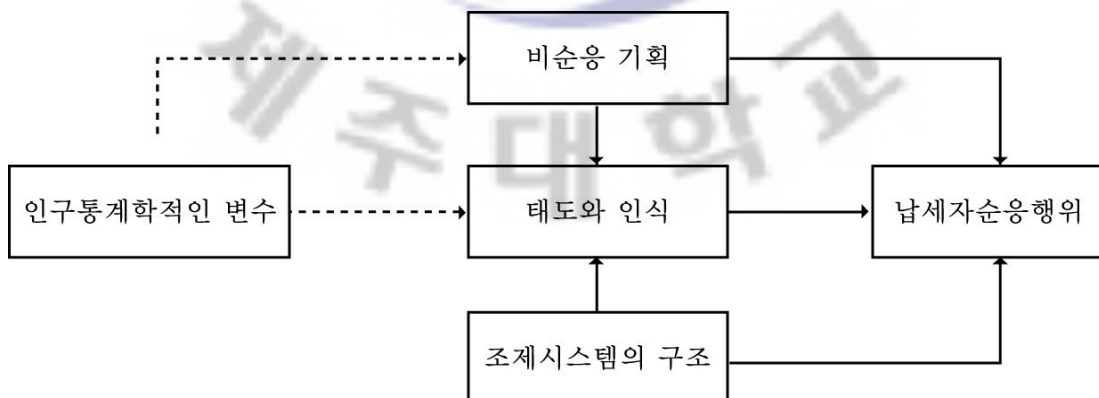
<그림 2-1> 납세자 순응에 관한 재무중심 모델



주) Becker(1967)의 재무중심모델;김진황, 1997, p.232 재인용

실증적인 연구는 납세자 순응의 결정요소들이 재무중심 모델보다 훨씬 더 많고 이들 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포괄적인 순응 문헌검토에서는 연구자들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납세자 순응의 척도에 연계되는 14개의 변수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Jackson and Milliron, 1986. ; 김진황, 1997. p.233 재인용) 이들 변수들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나이, 성 등), 비순응 기회의 대응 변수(교육, 소득 수준, 소득원천, 직업), 태도 변수(윤리, 조세시스템에 대한 공평성 인식, 동료영향), 구조변수(조세시스템의 복잡성, 국세청 관계, 제재, 발각확률, 세율)이다. 따라서 <그림 2-2> 에서 보는 것과 같이 Fischer(1991)은 순응행위의 확장 모델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변수들을 통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납세자 순응에 대한 재무중심모델의 경제적인 요인들은 확장모델에 포함된다. 즉 조세 시스템의 구조에 대한 변수들이 세율, 발각확률, 벌금구조를 포함한 것이다. 확장 모델은 분명히 탈세할 상이한 기회의 변수를 통합하고, 태도 변수도 포함한다. 기회와 조세구조는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즉 모두를 동시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변수들 사이에 복잡한 상호관계가 있다. 더욱이 동적 모델은 납세자 순응행위에서 역으로 태도와 인식, 비순응기회, 조세구조의 부가적인 방향을 포함할 것이고, 과거의 순응행위가 이들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2 > 납세자 순응에 관한 확장 모델



주) Fischer(1991)의 확장모델 ;김진황, 1997, p.233 재인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이다. 이러한 조세의 활동에 대해서 납세자들은 헌법에서 정한 납세의 의무를 준행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도에 순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실현하게 된다.

납세순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조세에 대해서 성실하게 조세를 납부하는 것을 성실납세 혹은 납세순응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는 동기 중 가장 초기의 단계가 순응(compliance)의 단계이다. 순응의 단계를 조세납부와 결부시키면 납세순응의 개념이 파생되고 납세순응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조세회피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세정책 중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시책을 펴왔으나 납세순응(tax compliance)에 대한 노력은 매우 부족한 편이다. 탈세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수단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에 대한 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안이 뒷받침 되어야 효과적인 탈세방지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국세청은 납세순응의 정의에 대하여 '국세청의 강력한 노력 없이, 정확하고, 적기에, 완전히 납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비율은 신고 납부된 세금총액을 감사에 의해 수정된 납부할 세금총액으로 나누어 계산된다고 하였다. Fisher et al.(1992)은 세무신고 요구에 대한 순응이라 함은 '납세자가 모든 과세소득을 적시에 신고하고 신고시점의 적용 가능한 세법의 규정과 시행규칙 및 판례에 따라 정확한 세액을 보고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하여 보면 납세순응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기간내에 신고하고 납기내에 납부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납세순응에 종류별로 지방세 관점에서 보면 첫째, 지방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다. 과세표준은 세액을 산출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으로써 그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과세표준을 성실하게 신고한다면 이는 납세순응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방세 중 취득세의 경우에서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이라고 하고 있다. 이 취득가액은 납세자가 실제로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인데 이 비용을 일부 포함시키

지 아니하고 신고를 할 수가 있다. 현행 지방세법상에는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은 성실하다고 추정하지만 그 신고금액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납세자 밖에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 구매 및 경매에 의한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에 의한 취득¹⁸⁾,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를 말한다)에 확인이 되는 취득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가격을 확인하여 추징하게 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겠다.

둘째, 지방세의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납부기간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부과지세목인 경우에는 납기한내에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세순응이라고 할 수 있다.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는 정확하게 납세순응을 알수 없으므로 신고납부 세목인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간내에 신고하고 납부기간내에 납부하는 것을 납세순응이며, 부과지 세목은 납기내에 납부하는 것이 납세순응이라고 할 수 있다.

2. 조세회피 이론

조세회피는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므로 국가 또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조세회피(Tax Avoidance)란 납세자가 조세납부를 최소화하거나 줄이려는 행위로서 합리적인 행위의 영역보다는 위법적인 행위의 영역에 가까운 말이다.

기업의 세부담의 경감행위는 절세와 탈세 그리고 조세회피로 구분한다. 탈세는 위법적으로 세부담의 경감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조세회피는 절세와 탈세의 중간에 위치하는 개념으로써 비록 합법적인 수단에 의해 세부담을 경감시키지만 그 결과가 입법의도에 합치 아니한 행위를 말한다(한국조세연구소, 1998, p.132).

조세회피는 한편으로는 적법성을 띠는 행위이지만 다른 편에서 볼 때 당연히

18) 모든 판결문에서 나타나는 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중에서 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은 제외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과세되어야 할 소득이 비과세된다는 점에서 비규범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세회피행위에는 탈세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며, 탈세는 사실을 왜곡하여 고의로 조세부담을 적게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조세회피는 세법상 허용된 범형식을 준수하고 사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그 형식에 따라 일반적으로 당연히 발생하여야 할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처리함으로써 세부담을 피하는 행위이다(이양현외, 1997, pp.73-79).

조세회피는 합법적인 조세회피행위인 절세와 비합법적인 조세회피행위인 탈세와 구분된다. 절세는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세법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행위이다. 그러나 탈세는 의도적이며, 비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법률상의 납세의무를 경감시키거나 완전히 회피하려는 행위를 말한다.(Richupan, 1984, pp.78-101).

탈세는 세법규정의 위반에 따른 조세회피이고, 절세는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납세자가 세법상의 허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점에서 탈세와 다르다. 그러나 실제로 합법적인 조세회피와 비합법적인 조세회피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세수확보라는 측면에서 법적인 납세의무보다 적은 조세납부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는 조세회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절세와 탈세를 구분하지 않는다. 탈세와 절세는 이론상으로는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나 정부의 조세수입이 감소로 인한 재정수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

절세에 대하여 독일의 조세법학자 Kaus Tipke는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비록 세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문리해석의 방법으로 법규정을 해석하면 법의 규정과 충돌함이 없이 법의 적용을 피하는 것’이라고 했고, 미국의 Bittker교수는 ‘범죄 아닌 방법으로 조세채무를 최소화하거나 피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그는 ‘조세회피라고 할 때 애매모호한 성문법 규정에 대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는 해석이나 만약에 대중적인 주목을 끌 정도가 되면 아마도 봉쇄될 것이 틀림없는 입법상 부주의로 인한 법의 흠결(shortage)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한 거래행위’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학자들이 조세회피에 대해서 주장한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조세포탈에는 은닉(concealment), 장부과손 등의 부정행위가 수반되는 것이며,

탈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위법적 행위와 합법적인 수단으로 인해서 조세를 절약하는 절세 등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보면 조세회피란 합법적인 조세회피인 절세와 비합법적인 조세회피인 탈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세회피의 유형에는 너무 유형이 많기 때문에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나 일반적으로 세무자료 및 세무정보의 미제출, 회계처리의 조작, 조세감면혜택의 남용, 재산의 은폐, 납세자의 해외도피 등이 있다. 조세회피의 문제점은 조세회피를 통하여 국가나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며,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심화시켜 국민의 단결력을 저하시키고 소득 재분배 정책을 교란시키며, 지하 경제의 생성원인이 되며, 조세회피에 의한 지하경제의 팽창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하시키며, 또한 조세회피는 부당한 이득을 얻은 사람을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잘살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노동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회전반에 불신풍조를 심화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한다(최근주, 2003, pp.6-9).

제4절 선행연구

납세순응과 조세회피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¹⁹⁾ 고 할 수 있으므로 선행 연구를 정리함에 있어 납세순응과 조세회피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납세순응에 대한 연구는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납세를 성실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며,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는 조세를 회피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제거하여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으로써 결과는 납세순응이나 조세회피 연구목적이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제도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 납세순응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고 조세회피는 조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순응을 하지 않으면 조세회피라고 할 수 있으며, 조세회피 요인을 제거하면 납세순응을 제고할 수 있다.

1. 제도적인 요인과 납세순응

선행연구에 대한 제도적인 요인에는 세율요인, 조세회피의 제재요인, 적발확률요인, 조세의 복잡성 요인, 조세의 공정성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세율 요인

일반적으로 조세는 헌법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해야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와 용역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율을 높게 올리면 세금이 증가하고 가처분 소득은 감소하기 때문에 납세순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과 기한내에 성실하게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라는 또 다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Yitzhaki(1974, pp.201-202)²⁰⁾은 벌금과 조세회피액 간에 대체효과를 분석한 것으로써 벌금이 조세회피액에 부과된다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연구결과 세율의 증가는 세금납부를 늘리며, 상대적으로 조세회피 행위는 감소한다고 하였으며, 세율의 상승은 신고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는 곧 소득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즉 납세자가 소득에 따라 감소하는 절대적 위험회피를 갖는다면 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조세회피액은 감소한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에 대체효과는 없다. 또한 가산세가 조세를 회피한 금액에 부과되면 조세회피에 대한 세율의 효과는 불확실하고, 세율의 증가했을 때 성실납세의 감소와 조세회피의 증가여부는 불확실한 경우는 없다.

Friedland 와 Maital 그리고 Rutenberg(1978, pp..107-116)²¹⁾는 세율이 25%에서 50%까지 증가 되었을때에 과소신고의 확률이 약 0.5~0.8%로 높아진다는 결과를 밝히고 있으며, 여러 변수들 중에서 탈세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세율이라고 주장했다.

Clotefelter(1983, pp.363-373)은 실제 개인들의 신고서를 이용하여 소득세 신고와 한계세율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 자료는 1969년 국세청의 납세자 성실납

20) 정희상, 2009, p.39. 재인용

21) 고은경, 2003, p.54. 재인용

세도 추정프로그램(TCMP)조사 자료이고, 약 47,000명의 개인들에 대한 조세신고서를 포함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수준, 소득의 원천, 적발확률 등의 설명변수와 결혼 여부, 연령, 거주지역 등의 더미(Dummy)변수가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후소득과 한계세율에 따라 과소신고가 증가하고, 높은 세율은 조세회피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 이자, 배당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 줄어들어는 것으로 나타났다.

Cox(1984, pp.283-288)²²⁾는 조세납부의 성실도는 한계세율이 높은 집단일수록 오히려 증가하다가 그 이상의 한계세율의 증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는 성실하지 않은 소득계층은 비교적 낮거나 높은 소득 세율을 적용받는 집단이고 가장 성실한 중간 정도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Graetz와 Wild(1985, pp.355-363)은 실제 개인들의 신고서를 이용하여 소득세 신고와 한계세율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소득수준별로 모두 한계세율과 조세회피 수준간에 통계적으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검정하였으며, 보다 높은 세율이 탈세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Spicer(1986, pp.13-20)²³⁾는 이론적 분석모형에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된 납세자의 행동결정요인을 추가하여 새로운 조세회피 의사결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결정모형에 따르면 정신적 원가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적발확률과 벌금률을 증가시키면 정신적 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과소신고 소득비율은 증가하며 따라서 조세회피는 감소한다. 그러나 세율을 증가시키면 정신적 원가를 보상 할 수 있는 과소신고 소득비율은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조세회피는 증가한다고 분석하였다.

2) 조세회피의 제재요인

조세회피의 제재는 조세회피를 억제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하게 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22) 여용범, 2006, p.32. 재인용

23) 문광주, 2008, p.40. 재인용

로서 이 벌칙은 가산세율 등이 있다.

Dean, Keenan과 Kenny(1980, pp.28-44)²⁴⁾는 스코틀랜드에서 성인 4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탈세기회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응답자들 중 1/4이상이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무당국에 그들 소득의 일부분만을 신고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1/4은 납세자들의 약 1/2이 그러한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소수는 납세자들이 벌을 받지 않고 대규모 탈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응답자들은 또한 그들의 동료들의 도덕성을 상대적으로 의심하였다. 소규모의 탈세를 하는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강한 도덕적 반대를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 연구는 이전의 조사와 달리 사람들이 탈세하기로 결정하는 이유를 응답자들이 제시하도록 요구하였는데 가장 많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과세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Cross와 Shaw(1982, pp.36-47)²⁵⁾은 탈세만을 분석하기 위해 Allingham과 Sandmo(1972, pp.323-338)에 의하여 채택된 것과 유사한 틀을 사용하여 탈세·절세 의사결정 모델을 만드는 시도를 하였다. 탈세와 절세는 대체적, 보완적 행위라고 주장하여 세율의 증가는 탈세자들이 절세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간단한 기대효용 극대화 모델을 세워 적발확률, 벌금율, 세율 등을 절세와 탈세에 대비하여 정태적 영향을 검토하였는데 탈세소득에 대한 세율의 변동효과는 불활실하다는 것과 소득세가 누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벌금율의 증가는 탈세소득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Grasmick와 Scott(1982, pp.213-230)는 일반방지 개념을 이용하여 조세회피와 벌칙수준의 경고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납세자가 벌칙의 수준이 증가하였다는 경고를 받으면 조세회피 성향이 감소한다고 주장하였으며, Spicer와 Thomas(1982, pp.241-245)는 조세회피와 제재사이에 유의적인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Witte와 Woodbury(1983, pp.41-87)는 납세순응(Tax Compliance)에 대한 제재 변수들의 영향에 대하여 검정하였다. 그들은 1970년에 국세청에 제출된 1969년도 조세신고서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진신고에 대한 국세청의

24) 최근주, 2003, p.25. 재인용

25) 최근주, 상계논문, p.25. 재인용

척도이고 1969년 TCMP와 관련된 납세자들에 대한 층화무작위표본(Stratified Random Sample)의 일련의 조사에 따라 계산하였다. 그것은 조세 과소납부와 과대납부의 절대값이 납부된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측정된다.

연구결과는 첫째, 높은 세무조사 확률은 낮은 소득의 비영업 납세자를 제외하고 높은 성실납세 이행율과 관련되었고, 둘째, 형사상의 사기에 대한 금고 선고의 엄격성은 일반적으로 성실 납세이행을 증가시켰으며, 셋째, 적발의 염려는 성실납세이행을 증가시켰으며, 넷째 소득효과는 복합적이고, 성실납세이행율은 소득에 따라 매년 약 3만달러의 소득까지 소득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다섯째, 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납세자들은 비 노동 소득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납세자들보다 조세규제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것 같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더 동의하고 있으며, 반면에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실업자들의 동의가 적었다.

고은경(2001, pp.123-129)은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자들이 불확실한 신고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프로젝트 이론 및 수정 프로젝트이론에 따라 의사결정하는 지를 실험연구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납세자들은 원천징수상황에 따라 환급상황일때보다 추가납부 상황일 경우에 더 납세를 불순응적으로 결정을 하고, 추가 납부금액이 클 경우와 환급받을 금액이 적을 경우에 더 납부 불순응적인 결정을 하였다. 세무조사 적발율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가산율이 높을 때 보다 낮을 때 더 납세 불순응적인 결정을 하였다. 또 납세자의 납세불순응 결정을 감소시키는 데는 가산율보다 세무조사 적발율이 더 중요한 변수이다. 한편 세무조사 적발율이 낮을때에는 가산세율을 높게, 세무조사 적발율이 높을 때에는 낮거나 중간정도의 가산세율로 설정하는 것이 납세불순응을 감소에 도움이 된다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과세당국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대부분의 납세자가 환급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고, 현재 너무 낮은 세무조사 적발률을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가산세율은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적발율과 상호보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진권외 2인(2002, pp.59-80)은 납세자들의 납세순응 행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율과 납세순응도와는 음의 관계를 가져 세율이 높을수록

납세순응도는 낮아진다. 가산세율과 납세순응도는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가산세율의 높아지면 납세순응도는 높아진다. 반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비율과 납세순응도는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실험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가산세율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가 징수한 세금으로 공공재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순응도가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무임승차하는 경향이 높아 납세순응도는 낮아지고 있다. 납세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효과는 납세순응도는 높이는 경향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정책수단들이 납세순응도에 대한 탄력성을 비교한 결과 정책수단이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적용할때의 탄력성이 납세순응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적용할 때의 탄력성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정책수단을 집행할때는 변화폭을 상대적으로 높게 하여야 효과적으로 납세순응도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박주철외 1인(2007, pp.53-77)는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성과들을 소개하고 이들 연구에서의 연구방법상의 특징과 한계를 도출하여 납세순응에 관한 실증연구를 할 경우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순응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조세징수체계, 과세소득의 원천, 납세자의 내적인식에 따라서 납세순응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조세징수체계는 세율, 피세무조사확률, 조세회피에 대한 징벌적 가산율 등이 해당되고, 과세소득의 원천은 노력없이 얻어진 중여소득이나 또는 소득획득에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 직무소득이나의 구분이고, 납세자의 내적인식은 납세자의 도덕감, 과세공평성 인식 유무 등이 해당된다.

둘째, 납세순응에 관한 연구방법은 피실험자의 신고소득액 선택결과에 따라 보수가 주어지는 실험연구형태와 연구자가 고안한 조세회피상황 시나리오에 피조사자로 하여금 조세회피의도를 기술하게 하는 설문조사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셋째, 납세순응에 관한 실증연구에서의 문제점은 실험(설문조사)상황 설정에 관한 것으로서 실험연구에서는 실험상황(세율구조, 가산세율, 피세무조사 대상 선정방법)이 현실에서의 조세실행형태와 다를 수 있고, 실험성과에 대한 보수가 미미할 경우 피실험자의 실험에의 몰입효과가 낮아져 결과적으로 실험결과의 일반

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넷째,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설문조사 대상자가 현실에서의 납세자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대상자가 설문조사에서 한 답변과 현실 조세상황에서의 행동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납세순응에 관한 실증분석에서는 현실 조세체계와 일치하는 실험(설문조사)상황설정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희상(2009, pp.136-141)의 연구에서는 국세 관련 세법이 개정(2007. 1.1 시행)으로 가산세율이 세목에 따라 최저 33.3%에서 최고 300%까지 급격하게 인상된 시점을 전후로 기업의 신고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부당신고 가산세율의 인상으로 인하여 기업의 신고수준 차이점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는 부당신고가산세율의 인상은 납세 순응도에 양(+)의 효과가 있다는 다른 연구와는 차별화되고 있어 가산세율 인상의 곧 납세순응을 높인다고 하는 연구에 상반된 견해이다.

3) 적발확률 요인

Allingham과 Sandmo(1972, pp.323-338)은 납세자들은 불확실성하에서 소득신고에 대한 의사결정은 실제소득을 사실대로 신고하거나 실제소득보다 적게신고하거나 하는 두가지 선택안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때 가치분 소득이 기대효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납세자는 하나의 의사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연구결과에서는 세율변화와 신고소득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벌금제도와 신고소득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적발확률과 신고소득과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하고 있다. 즉 가산율을 증가시키면 신고소득이 증가하며 결국에는 조세회피가 감소하여 납세순응이 된다는 것이다.

Srinivasan(1973, pp.339-346) 기대소득 극대화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납세자는 조세회피 행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담할 세액과 벌금을 납부한 후의 기대소득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만일 납세자가 이 조건을 고려해서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정부의 적발확률이 일정할 경우 벌금가산율이 증가하면 과소신고비율이 감소하

여 조세회피행위는 감소하게 된다. 둘째, 벌금 가산율이 일정한 경우 정부의 적발확률이 증가할 경우 최적 과소신고 비율이 감소되므로 조세회피행위도 감소한다. 셋째, 소득세 함수와 위험중립적인 납세자를 가정하고 납세자의 소득신고 수준은 그의 실제소득의 감소함수이고 적발확률이 줄어드는데 따라 소득신고 수준도 감소한다. 넷째, 적발확률이 소득의 증가함수이며, 세율이 비례적이라면 과소신고 소득의 비율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Christiansen(1980, pp. 389-393)은 벌금과 적발확률간의 효과분석을 시도한 연구로서 조세회피 적발확률은 낮지만 발각되면 벌금이 무거운 경우가 벌금은 낮지만 적발확률이 높은 경우보다 더 효과적인 조세회피 억제수단이라고 하였다.

이종환(1992, pp.57-72)은 납세자를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하여 납세자 유형에 따른 조세회피 성향을 조사하였다. 종속변수는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이며, 독립변수는 세율, 세율구조, 적발확률, 가산세율, 재정불공정성이었다. 연구결과, 모든 납세자에게서 세율과 조세회피행위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확률과 조세회피행위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특히 일반과세자에게서 조세회피 억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세 제도도 조세회피행위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적발확률에 비해서는 낮았다. 이는 가산세보다는 적발확률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인 억제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재정불공정성과 조세회피 행위와의 상관관계는 모든 납세자에게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시영(1993, pp.105-108)은 사업소득자의 조세회피 행위를 실험실 연구방법에 의하여 연구하였다. 기존 연구들과 다른 점은 동료집단의 조세회피의 정도를 관찰하였다는 점이다. 종속변수는 조세회피 태도 또는 조세회피 의지로 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세율, 적발확률, 가산세율, 소득수준 등이다. 실험조사의 분석결과는 소득수준과 조세회피와는 상관관계가 없고, 세율과 조세회피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세율이 높아지면 조세회피 행위도 증가하고, 적발확률을 높이면 조세회피 행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산세율에 비해 적발확률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조세의 복잡성

납세순응 또는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의 하나가 조세의 복잡성도 그 요인 중의 하나로 연구가 되고 있다.

Long과 Swingen(1985, pp315-403)²⁶⁾은 조세의 복잡성을 정의하는 대상으로 조세신고서 작성자를 이용하여 세법의 지나친 상세성과 수많은 계산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그들 대상의 복잡성 점수의 86%를 설명한다고 밝혔다.

Westat(1980, pp.105-108)는 세법의 복잡성이 납세자들을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하여 조세회피를 단념시키도록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Vogel(1974, pp.499-513)은 조세순응과 복잡성 사이에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할수록 납세자들은 이를 조세회피의 기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심석무(2002, pp.130-132)는 납세자의 세제인지도와 조세회피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는 조세회피로, 독립변수로는 납세자의 특성과 세제인지를 중심으로 하여 다섯개의 특성을 각각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세의 적정성과 정부지출의 신뢰성, 세무조사의 적법성, 조세의 공평성, 세법의 복잡성에 대한 세제인지도는 조세회피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열(2007, pp.82-86)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과 세제인지도가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자본금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세제의 공평성과 정부지출의 신뢰성,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따라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자본금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모든 변수의 세제인지도가 조세회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외국인 투자기업중 수입금액 규모가 100억원미만인 기업은 세법의 복잡성, 정부지출의 신뢰성, 세무조사의 적법성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쳤으나 수입금액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모든 변수의 세제인지도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국인 투자기업중 신주나 구주, 합병을 통한 직접투자유형은 세제의 공

26) 신용대, 2008, p.33. 재인용

평성, 세법의 복잡성, 정부지출의 신뢰성, 세무조사의 적법성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외국인 투자기업 중 투자본국이 미국과 기타국인 경우 세무조사의 적법성만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세법의 복잡성과 정부지출의 신뢰성, 세무조사의 적법성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업종 중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세제의 공평성, 세법의 복잡성, 세율의 적정성, 정부지출의 신뢰성, 세무조사의 적법성이 조세회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적법성만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면제도의 축소, 세율인하, 수직적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이 조화, 모든 기업에 대해서 공평한 혜택 부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광주(2008, pp.105-108)은 부동산 양도인의 세제인지도가 성실납세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실증분석을 한 결과, 세제의 복잡성이 성실납세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부동산 양도인의 성실납세의식에서 실지거래 가액 중 실지거래가액 축소와 보유기간을 적극 활용하려는 회피의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세율의 적정성이 성실납세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성실납세의식 중에서 비과세제도의 활용, 보유기간 활용, 실지거래가액 축소를 통해서 세금을 적게 내려는 회피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하나의 결과는 정부의 조세정책의 신뢰성이 성실납세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성실납세의식중에서 과대비용 계상, 보유기간 활용, 실지거래가액 축소를 통해서 조세를 회피하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성실납세 유인방향으로 세제의 복잡성을 단순화, 부동산 양도관련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5) 조세공평성 요인

조세가 공평하다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세금납부에 대한 보상의 공평성과 부담의 공평성을 의미한다

김진황(1993, pp.79-84)은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소기업(207개 업체)과 비상장기업(122개 업체)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정부신뢰도, 납세풍토, 납세의식, 과세공평성, 제정 공평성, 조세부담률, 제재정도, 행정능력, 세제 복잡성, 매출액, 직종 등의 변수를 가지고 조세회피의 형태를 요인분석과 회귀분석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매출액의 규모가 클수록, 이익수준이 낮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 기업풍토가 중소기업의 납세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당국의 조사빈도나 세무조사의 엄격성등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조세회피정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조세회피성향이 높은 비상장기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평성 요인이며, 비상장기업중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부담율이 가장 높은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신형환(1993, pp.45-55)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사회현상을 고려하여 8개요소 즉 세무행정의 공정성, 실제소득금액, 세율, 연령, 교육수준, 조세회피에 대한 윤리적 태도, 기장의무자에 대한 조세회피율, 조세를 회피하는 기장의무자의 비율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회피율과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연구하였다. 분석결과는 조세제도나 세무행정의 공정성 등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세무조사의 비율을 높이거나 세법을 이해하기 쉽게 제정하는 것도 성실한 납세의무를 유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변용환(1995, pp.35-45)은 조세형평성을 성실한 납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인식하면서 조세구조의 불공평성이 강력한 조세저항감을 유발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조정환(1996, pp.243-269)은 국내의 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 회사의 경리 및 회계부서, 자금부서등의 과장급 이상을 상대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분석가능 자료 82부를 사례로 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즉 중소기업의 법적 환경으로 과세공평성, 조세회피에 대한 제재, 중소기업의 상황적 요인으로 조세부담간의 동료집단의 조세회피, 납세윤리가 중소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중소기업의 법적환경과 상황적 요인이 납세윤리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과세공평성은 중소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세윤리는 중소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음(-)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세공평성과 동료집단의 조세회피가 납세윤리와 연관된 변수로 나타났다.

권영모(1997, p.5)는 사회경제적 여건속에서 납세의식의 성실도를 고양시키는 조세정책을 위해서는 조세공평성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최근주(2003, pp.80-83)는 개인납세자의 특성과 조세제도의 인지도를 파악하고 납세자의 특성과 조세제도의 인지도에 따른 조세회피 관계를 분석하였다.

납세자의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소득원천등 다섯가지를 선정하였고 납세자의 조세제도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세의 공평성, 세법의 복잡성, 조세의 적정성, 정부지출의 신뢰성, 세무조사의 적법성등의 변수를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세무조사의 적법성, 정부지출의 신뢰성, 세제의 공평성에 대한 인지도는 조세회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성실납세를 유인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의 과학적인 관리방법을 시스템화하여야 하며, 정부의 지출은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도록 예산운영시스템을 개편하여야 하며, 조세의 공평성 실현을 위해 소득 유형간,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홍성선(2009, pp.72-77)은 부동산 관련 지방세 납세의식 영향요인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납세의식 영향요인(지방세 공평성 인지도, 부동산 관련 지방세 이해, 지방세 복잡성, 지방세 체납처분 강도인식, 행정서비스 만족도)을, 종속변수로는 납세의지로 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지방세 공평성 인지도가 납세의지에 정(+)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부동산 관련 지방세가 공평하면 납세의지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지방세 이해,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납세의지에 정(+)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지방세 체납처분 강도인식과 지방세 복잡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과 다중로짓 분석을 하였는데 위계적 다중 로짓분석에서 지방세 복잡성은 납세의지에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제도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한 요약은 <표 2-20>와 같다.

<표 2-20> 제도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요약

연구자	요인	종속 변수	연구결과
Allingham Sandmo (1972)	적발확률	납세 순응도	· 적발확률과 신고소득과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하고 있다. 즉 가산율을 증가시키면 신고소득이 증가하며 결국에는 조세회피가 감소한다.
Srinivasan(1973)	적발확률	조세회피	· 정부의 적발확률이 일정할 경우 벌금가산율이 증가하면 과소신고비율이 감소하여 조세회피행위는 감소하게 된다.
Christiansen (1980)	적발확률 벌금	조세회피	· 조세회피 적발확률은 낮지만 발각되면 벌금이 무거운 경우가 벌금은 낮지만 적발확률이 높은 경우보다 더 효과적인 조세회피 억제수단이라고 한다.
이중환 (1992)	세율, 적발 확률, 가산세율	조세회피	· 세율과 조세회피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 적발확률과 조세회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 가산세제도와 조세회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유시영 (1993)	소득수준 적발확률 가산세율	조세회피	· 소득수준과 조세회피와는 상관관계가 없고, 세율과 조세회피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세율이 높아지면 조세회피 행위도 증가하고, 적발확률을 높이면 조세회피 행위가 감소한다.
Westat (1980)	조세의 복잡성	조세회피	· 세법의 복잡성은 납세자를 불확실한 상황에 높이게 하여 조세회피를 단념시킨다
Vogel (1974)	조세의 복잡성	조세순응	· 조세순응과 복잡성사이에는 부(-)의 관계가 있다
고은경 (2001)	적발율 가산율	납부 불순응	· 세무조사 적발률이 높을 때 보다 낮을 때, 가산율이 높을 때 보다 낮을 때 더 납부불순응을 한다.
현진권외2 (2002)	세율	납세 순응도	· 세율이 높을수록 납세순응도는 낮아진다 · 가산세율이 높아지면 납세순응도는 높아진다.
심석무 (2002)	납세자 특성, 세제인지도	조세회피	· 조세의 적정성과 정부지출의 신뢰성, 세무조사의 적법성, 조세의 공정성, 세법의 복잡성에 대한 세제인지도는 조세회피와 상당한 관련 있다.
김성열 (2007)	외투기업 특성 세제인지도	조세회피	· 자본금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조세회피 영향이 있으나 1,000억원이상인 기업은 영향이 없다 · 수입금액 규모가 100억원미만인 기업은 세법의 복잡성, 정부지출의 신뢰성, 세무조사의 적법성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쳤으나 수입금액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모든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표 2-20 > 제도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요약(계속)

연구자	요인	종속변수	연구결과
정희상 (2009)	자산규모, 부당신고 가산세율의 인상	신고 소득율	· 부당신고 가산세율의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신고 수준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문광주 (2008)	세제의 복잡성등	성실납세	· 세제의 복잡성, 세율의 적정성 및 정부의 신뢰성이 성실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McCaleb (1976)	적발 확률	조세회피	· 적발확률이 조세납부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을 통해 적발확률의 증가는 납세를 증가시킨다
Christiansen (1980)	적발확률	조세 회피	· 적발확률은 크지만 적발에 대한 가산세의 가벼운 경우보다 적발확률은 작지만 가산세가 과중한 경우가 조세회피의 효과가 크다.
여용범 (2006)	적발 확률	납세 순응	· 부동산 중개업자의 납세의식 영향요인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세 부담, 적발확률이다
김진황 (1993)	공평성	조세 회피	· 조세회피성향이 높은 비상장기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평성 요인이며, 비상장기업중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부담율이 가장 높은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변용환 (1995)	공평성	성실 납세	· 조세형평성을 성실한 납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인식하면서 조세구조의 불공평성이 강력한 조세저항감을 유발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조정환 (1996)	공평성	조세 회피	· 과세공평성은 중소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세윤리는 중소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주 (2003)	공평성	조세 회피	· 세무조사의 적법성, 정부지출의 신뢰성, 세제의 공평성에 대한 인지도는 조세회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선 (2009)	공평성 이해, 복잡성	납세의식	· 분석결과 지방세 공평성 인지도, 지방세이해,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납세의식에 정(+)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2. 개인적인 요인과 납세순응

조세회피나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 중 개인적인 요인에는 성별요인, 연령요인, 소득수준 요인, 기타요인(교육수준 요인, 조세윤리 요인, 소득원천 요인, 조세의 공평성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 정부의 신뢰도 요인, 동료 집단의 조세회피요인)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 성별 요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태어나며, 남자와 여자는 생리적으로 서로 다른 구조로 그 성격이나 심리상태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심리상태 등이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출발되어진다.

Young(1994, pp.82-105)은 미시진주 개인소득세 사면 참가자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의 특성요인들과 성실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각각 조세회피가 크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외에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조세회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는 Mason과 Calvin(1978, pp.26-29)²⁷⁾의 연구가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조세회피를 가지는 이유는 남성의 소득수준이 여성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Tittle(1980, pp.108-193)²⁸⁾의 연구에서는 성별과 조세회피의 관계는 세대간의 차이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여성은 납세성실성을 향상시키는 보수의 생활양식, 도덕적 제약, 규칙 등에 익숙한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Graetz와 Wild(1985, pp.355-363)의 연구에서는 신세대 여성들이 독립적이고 전통적인 것을 배격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조세회피와 같은 경제적 공격성에 관하여 남성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실증적인 증거를 들면서 기존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

Richards와 Tittle(1984, pp.1-12)는 성과 적발확률간에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 세금을 회피하였을 때의 적발가능성에 대한 인지도가 남성보다

27) 신용대, 전계논문, p.49. 재인용

28) 최근주, 전계논문, p.40. 재인용

여성이 더 높다고 했다. 이러한 점은 성장과정에서 여성이 부모로부터 더 많은 보호와 감시를 받으며 자라기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만약 이제부터라도 부모들이 그런 관심과 보호를 줄이게 된다면 그런 성별 차이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연령 요인

연령은 대표적인 인구통계학적인 변수중의 하나이며, 조세회피나 납세순응에 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고려되는 변수이다.

Spicer와 Lundstedt(1976, pp.241-245)²⁹⁾의 연구는 미국 오하이주 도시들 주변의 주택가에서 130가구의 중·상위층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표본대상으로 하여 조세윤리 수준 등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연령과 조세저항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Witte와 Woodbury(1985, pp.1-13)³⁰⁾의 연구, Dubin과 Wilde(1988, pp.61-74)의 연구에서는 연령은 조세회피와 부(-)의 관계를 가졌다. 즉 연령이 많을 수록 위험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으로 변하여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다시 말하면 연령이 많을수록 납세순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Tittle(1980, pp.108-193)은 연령과 조세회피간의 유의한 관계에 대하여 연령과 조세회피의 관계는 세대 및 생활양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젊은 납세자들은 연령이 많은 납세자들보다 기꺼이 위험에 감수하며, 법률적 제재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이다.

Song과 Yarbrough(1978, pp.442-452)의 연구, Spicer와 Becker(1980, pp.205-206)의 연구, Million(1985, pp.794-816)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납세성실성 간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많이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아니한 관계도 확인되었다. Clotfelter(1983)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납세성실성간에 부(-)의 관계가 존재하고, 모수에서 젊은 집단과 연령이 많은 집단이 가장 높은 성실성 수준을 가지며, 연령과 납부성실성간에는 비선형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신용대(2008, pp.92-95) 전자상거래 관련 세제인지도가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

29) 김성열, 2007, p.39. 재인용

30) 문광주, 전계논문, p.40. 재인용

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첫째, 조세결정자, 기업, 소비자들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결혼여부에 따라서 세제인지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세제인지도와 조세회피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공평성과 적정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50대 이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나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변수의 중요성과 연령을 이용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나 납세순응에 대한 연령의 영향은 확실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3) 소득수준 요인

소득수준은 인구통계학적인 변수의 일종으로서 조세회피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서 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은 임금율과 교육수준의 대용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

소득수준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조세회피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나타낸 반면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높은 소득의 납세자가 덜 순응적이라는 연구자와 더 순응적인 연구자가 나누어져 있음으로 소득수준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Srinivasan(1973, pp.339-346)의 연구에서는 적발확률이 일정하면 누진세제하에서 납세자의 실제소득이 증가할수록 과고신고소득의 비율이 크다고 설명하였으며, Mork(1975, pp.70-76)³¹⁾은 노르웨이인 3,4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포탈 여부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납세자들이 실제로 큰 규모의 조세포탈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조사결과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 갈수록 신고소득의 비율은 감소하므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신고소득의 비율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Mork의 경험적 분석은 Allingham-Sandmo 모형에서 상대적 위험회피가 소득의 감소함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Srinivasan(1973, pp.339-346)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31) 문광주, 전계논문, p.38. 재인용

그러나 Spicer와 Lundsted(1976, pp.241-245)의 연구에서는 가구당 소득과 조세저항사이에는 부(-)의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려 Srinivasan(1973, pp.339-346)나 Mork(1975, pp.70-76)와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Ekstrand(1980, pp.245-259)³²⁾는 연구결과 탈세 경험이 있다고 시인한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연령층에 속했고, 평균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았으며, 중류이상의 소득계층에 속하면서 부업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납세신고를 스스로 하는 사람들일수록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탈세의 심각성을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측면에서의 연구결과를 보면 높은 소득계층에 속한 납세자들 중 다수가 실제로 탈세행위를 범하긴 해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Witte와 Woodbury(1985, pp.1-13)의 연구에서는 미국 국세청 납세의무 수준 측정프로그램인 TCMP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수준과 조세순응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간정도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가 가장 순응적이고, 아주 높거나 낮은 수준의 납세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순응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우윤(1996, pp.144-159)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득은 전체적으로 조세포탈 성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특히 소득은 탈세 무경험 근로소득자에 비해 탈세 유경험 근로소득자의 조세포탈 성향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호외1인(2008, pp.55-84)은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세금축소보고 인식”과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의 두 요인으로 나누고 있는데, “세금축소보고 인식” 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세금축소 보고에 대한 인식이 낮아져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세금축소보고를 용인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세금 납부에 대한 인식”에서는 기혼자와 연령이 높아질수록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위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회피나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32) 문광주, 전계논문, p.38. 재인용

4) 기타 요인

(1) 소득원천 요인

소득의 원천은 소득항목의 유형과 본질을 의미한다. Cowell(1985, pp.19-34)의 연구에서는 소득원천을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소득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의 다양한 조세회피 노력에 의해 조세회피 기회는 증가된다고 보았다. Hotaling와 Arnold(1981, pp.8-14)³³⁾의 연구에서는 소득원천과 납세자의 윤리, 납세자의 불공평성간에 어떤 특수한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2) 교육수준 요인

Westat(1980, pp.105-108)는 납세자의 지식이 조세순응에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 전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토론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35%가 조세체계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미국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제도의 중요한 요소로써 납세자의 재능을 들고 있다.

Lewis(1979, pp.245-257)는 유럽지역에서의 세무 연구를 검토한 후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세금을 단지 부담으로만 생각하고 공익을 얻는데 대한 반대급부라는 점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Witte와 Woodbury(1985, pp.1-13)의 연구에서는 미국 국세청의 교육노력이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납세자 집단의 조세순응 성향을 증진시키는데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Chang과 Nichols 그리고 Schultz(1987, pp.299-309)의 연구에서는 세법을 더 잘 알고 있는 대상자들은 조세회피시 세무조사에 대한 제비뽑기 게임(audit-lottery)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교육의 두 측면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기원(2001, pp.86-94)은 교육수준에 따른 세제인지도의 차이는 세무양식의 복잡성을 제외한 나머지 세제인지도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이 조세순응요인으로 작용하는 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중요한 것은 세법에 대한 오해를 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순응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최근주, 전계논문, p.43. 재인용

(3) 조세윤리 요인

Song과 Yabrough(1978, pp.442-452)는 「조세회피는 정부이외에는 손해를 주지 않으므로 심각한 범죄가 아니다」라는 항목과 「국세청을 대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는 포착되지 않는다」라는 항목의 설문서를 통해 조세윤리의 심리태도와 행위적 측면을 고찰하는 전형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본의 88%가 조세회피 행위를 범죄로 인식했으나 그 정보를 정부에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Benjamini와 Maital(1985, pp.78-142)³⁴⁾은 소득과소 신고시 예상 화폐 보상이 상당할지라도 조세당국에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이유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였다. 소득의 과소보고가 납세자에게 상당한 불명예 원가를 수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세회피에 대한 개인의 의사결정은 다른 사람들이 탈세 정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진태영외1인(2002, pp.35-58)은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조사한 결과 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구성하는 변수인 세무행정의 기능적 요소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록 납세자 만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경변수로 선정된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의 공정성과 세무부패에 대한 인식은 납세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동료집단의 조세회피 요인

동료집단이 강한 조세회피 성향을 보이는 경우 자신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정당성 부여 혹은 상대적인 피해 의식을 줄이기 위해 조세회피 성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동료집단이란 친구, 동료, 함께 일하는 사람, 동일 업종에 종사하며 서로 협의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 단지 알고 있는 사람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Spicer와 Lundstedt(1976, pp.241-245)의 연구에서 납세자가 집단내에서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조세를 회피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약화되어 조세회피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Kaplan과 Reckers 그리고 Roark(1988, pp.371-379)의 연구에서는 납세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조세회피 행위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자신의 회피를 정당화하여 조세를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Vogel(1974, pp.499-513)³⁵⁾의 연구에서는 납

34) 남기원, 2001, p.31. 재인용

35) 문광주, 전계논문, p.37. 재인용

세자들의 공동체와 동료집단이 조세에 비순응적일때 높은 조세회피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개인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요약은 <표 2- 21>과 같다.

<표 2-21> 개인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요약

연구자	요인	종속변수	연구결과
Young (1994)	인구통계학적요인 (성별등)	조세회피	· 자영업자는 비자영업자보다 회피경향이 크고 남성이 여성보다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각각 조세회피가 크다
Tittle (1980)	인구통계학적요인 (성별등)	조세회피	· 성별과 조세회피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여성은 납세성실성을 향상시키는 보수의 생활양식, 도덕적 제약 등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Graetz와 Wild (1985)	인구통계학적요인 (성별등)	조세회피	· 신세대 여성들이 독립적이고 전통적인 것을 배격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조세회피와 같은 경제적 공격성에 관하여 남성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Richards과 Tittle(1984)	성별, 적발확률	조세회피	· 성과 적발확률간에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 세금을 회피하였을때의 적발가능성에 대한 인지도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다고 했다
Spicer와 Lundstedt (1976)	연령	조세회피	· 연령과 조세저항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Witte와 Woodbury (1985), Feinstein (1989)	연령	조세회피	· 연령은 조세회피와 부(-)의 관계를 가졌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납세순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Song과 Yarbrough (1978)	연령	조세회피	· 연령과 납세성실성 간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진다
Spicer와 Becker (1980)	연령	조세회피	· 연령과 납세성실성 간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진다
신용대 (2008)	개인적특성 세제인지도	조세회피	· 연령에 따라서는 공평성과 적정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50대이상인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rinivasan (1973)	소득수준	조세회피	· 적발확률이 일정하면 누진세제하에서 납세자의 실제소득이 증가할수록 과고신고소득의 비율이 크다

<표 2-21> 개인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요약(계속)

연구자	요인	종속변수	연구결과
Mork (1975)	소득수준	조세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르웨이인 3,4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조사결과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 갈수록 신고소득의 비율은 감소하므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신고소득의 비율은 감소한다
Ekstrand (1980)	소득수준	조세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계층에 속한 납세자들중 다수가 실제로 탈세 행위를 범하긴 해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세무관서와 접촉한 경험이 많은 납세자들이 탈세를 하는 경향이 짙다
Cowell (1985)	소득원천 정보	조세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원천을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소득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의 다양한 조세회피 노력에 의해 조세회피기회는 증가된다고 보았다.
Witte와 Woodbury (1985)	소득수준	조세순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국세청 납세의무 수준 측정프로그램인 TCMP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수준과 조세순응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간정도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가 가장 순응적이고, 아주 높거나 낮은 수준의 납세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순응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우윤 (1996)	소득수준등	조세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은 전체적으로 조세포탈 성향과 양(+)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득은 탈세 무경험 근로소득자에 비해 탈세 유경험 근로소득자의 조세포탈 성향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호외1 인(2008)	소득수준등	납세순응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또한 조세/세무행정에서 인식변수중 제3자의 정보제공 및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이 성실납세의식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세금 납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Westat (1980)	교육수준	성실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의 지식이 조세순응에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 전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토론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35%가 조세체계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미국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제도의 중요한 요소로써 납세자의 재능을 들고 있다.

<표 2-21> 개인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요약(계속)

연구자	요인	종속변수	연구결과
Lewis (1982)	교육수준	성실납세	· 유럽지역에서의 세무 연구를 검토한 후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세금을 단지 부담으로만 생각하고 공익을 얻는데 대한 반대급부라는 점은 무시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있어서 재정일반에 대한 지식부족은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Witte와 Woodbury (1985)	교육노력도	조세순응	· 미국 국세청의 교육노력이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납세자 집단이 조세순응 성향을 증진시키는데 관계 있다고 주장하였다.
남기원 (2001)	세제인지도 납세자의 특성	성실납세	· 교육수준에 따른 세제인지도(세제의 공평성, 세법의 복잡성, 세무양식의 복잡성, 세율의 적정성, 정부지출의 신뢰성, 세무조사 및 행정처분의 합리성)의 차이는 세무양식의 복잡성을 제외한 나머지 세제인지도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ng과 Yabrough (1978)	조세윤리	조세회피	· 「조세회피는 정부이외에는 손해를 주지 않으므로 심각한 범죄가 아니다」라는 항목과 「국세청을 대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는 포착되지 않는다」라는 항목의 설문서를 통해 조세윤리의 심리태도와 행위적 측면을 고찰하는 전형적인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 표본의 88%가 조세회피 행위를 범죄로 인식했으나 그 정보를 정부에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Lewis (1979)	조세윤리	조세회피	· 영국에서 200명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응답자들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탈세를 범죄로 생각하고, 납세자들은 법에 의하여 가혹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규모 탈세자에 대한 응답은 분명하지 않았다.
Benjamini와 Maital (1985)	조세윤리	조세회피	· 조세회피에 대한 개인의 의사결정은 다른 사람들의 탈세 정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탈세가 널리 확산된다면 탈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거의 탈세를 하지 않으면 모든 소득을 신고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Song과 Yabrough (1978)	공정성 인식	조세회피	· 세제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보다 조세회피 성향이 높다

<표 2-21> 개인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요약(계속)

연구자	요인	종속변수	연구결과
Spicer와 Lundstedt (1976)	공정성 인식	조세회피	· 납세자가 정부와의 어떠한 교환적 측면이 불공평하다고 지각할 때 조세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
Spicer와 Becker (1980)	공정성 인식	조세회피	· 조세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인지한 납세자는 자신의 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줄이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불공평 상태를 회복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Mason과 Calvin (1984)	공정성 인식	조세회피	· 오리건주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세제도의 공정성 여부, 조세회피의 적발확률 등을 분석한 결과 조세제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같이 조세회피 행위를 한다는 하였으며, 적발확률의 조세회피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
Vogel (1974)	신뢰도	조세회피	· 정부가 세금을 의미 없는 목적에 사용(56% 동의)하고 있고, 세금을 낭비(51.5%가 동의)하고 있다고 응답을 한 납세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납세자의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조세회피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Song과 Yarbrough (1978)	신뢰도	조세회피	· 미국 국세청의 효율적인 조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가 징수능력을 신뢰받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은 줄어든다고 주장하였다.
Spicer와 Lundstedt (1976)	동료집단 인식	조세회피	· 납세자가 집단내에서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조세를 회피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약화되어 조세회피가 증가한다
Kaplan과 Reckers (1985)	조세회피 정도 지각	조세회피	·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의도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조세회피 정도에 대한 지각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든다고 주장하였다

3.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및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는 크게 제도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연구의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제도적인 요인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세율이 증가하였을 때에는 조세회피가 증가한다고 분석하고 있으며(Spicer, 1986, pp.13-20), 가산율을 높이면 납세순응이 되며(Allingham과 Sandmo, 1972, pp.323-338), 조세의 복잡성은 납세순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Vogel, 1974, pp.499-513). 조세의 공정성은 납세자순응에 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최근주, 2003, pp.80-83)

개인적인 요인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조세회피가 높으며(Young, 1994, pp.82-105), 연령은 낮아질수록 조세회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picer, 1986, pp.13-20 ; Song과 Yarbrough 1978, pp.442-452). 소득원천에 대해서는 소득원천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는 조세회피가 증가한다고 하고 있다(Cowell, 1985, pp.19-34). 미국국세청에서는 국세청의 노력 결과에 따라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다(Witt와 Woodbury, 1983, pp.41-87)고 하고 있으며, 탈세를 하는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세윤리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으며(Lewis, 1979, pp.245-247) 조세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측면에서는 납세순응도에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세금을 의미없는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Vogel, 1974, 499-513) 정부가 징수능력을 신뢰받을 때 조세회피 성향은 줄어든다고 하고 있다(Song과 Yarbrough, 1978, pp.442-452). 또한 동료집단 인식에 대한 납세순응에 대한 연구 결과는 동료집단의 조세회피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조세회피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Spicer와 Lundstedt, 1976, pp.241-245).

이러한 연구들은 조세회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조세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연구한 선행연구들이 우리나라의 세무 환경과 달라 이를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분야

도 국세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세에 대한 연구도 연구 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결과가 모든 사항에 적용시킬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납세순응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앞에서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실제 부과자료로 확인함은 물론 차별화된 연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기존 연구는 납세순응이나 조세회피에 대해서 세율, 발각확률, 조세의 공정성, 가산율 등이 납세순응이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실적이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가 대부분이나 본 연구는 실제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세자가 납부방식(신고납부, 부과고지)에 따라 납세순응이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특정한 세목에 대해서 납세순응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으나 세목간 비교하면서 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고납부 세목이라 하더라도 그 세목마다 신고납부기한이 각각 다르므로 이러한 세목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세목간 특성에 따라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납세순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납세자의 인구 통계학적인 요인 등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납세자의 인지를 이용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는 2008년도에 부과하였던 지방세 실제 부과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는 성별, 연령, 소득수준, 소득원천, 교육, 직업 등을 변수로 하여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부과하기 위해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한 것이므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를 사용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성별, 연령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와 같으나 세액, 납세자의 거주지는 선행연구된 변수에는 없다. 세율을 인상하면 세액이 높아지므로 세율의 대응치로 세액을 사용하였으며, 납세자의 거주지는 제주도가 다른 시도와 원거리이며 섬지역이라 거주지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제3장 가설설정 및 연구방법

제3장 가설설정 및 연구방법에서는 가설을 설정한 후에 가설검정을 하기 위해 실증분석 모형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검정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실증 분석에 사용되어지는 자료에 대한 표본을 선정하고, 표본의 현황을 제시한다.

제1절 가설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에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율, 적발확률, 성별 등 14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제도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신고방식인 신고납부와 부과고지, 신고납부 세목특성, 세액, 성별, 나이, 납세자 거주지 등이다.

지방세에 대한 납부방식은 세목마다 과세대상마다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납부방식은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제도가 있다. 신고납부제도는 징세편의를 위해서 납세자에게 높은 납세의식과 고도의 세법지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볼 때 부과고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신고납부제도가 부과고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신고납부제도가 납세자에게 높은 성실 납세의식과 세법지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세목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서 신고납부세목에 따라 납세순응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납부세목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함으로써 납세순응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납세자의 특성으로 인해서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납세자의 세액, 성별, 연령, 거주지 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납세순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제 부과자료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세수확충과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기 위해서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제도에 따라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신고납부 세목 중에서도 세목 특성에 따라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는지와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지방세 납부방식(신고납부, 부과고지)과 납세순응

조세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높임으로 납세협력 비용과 징세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징수금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액, 납부시기 등을 정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며, 부과고지제도는 과세권자가 과세대상을 조사한 후에 과세표준, 세액, 납기등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는 제도이므로 부과고지제도가 신고납부제도에 비해 납세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고납부제도는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징수금을 극대화할 수 있어 조세행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 전부터 부과고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법인세 등 세목이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납세순응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신고납부제도라고 해서 부과고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고납부제도 세목 납세자가 부과고지제도 세목 납세자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가 납세불순응을 하였을 때에 벌칙조항으로 가산세 제도가 있으나 부과고지제도는 가산세제도가 없기 때문에 납세자는 부과고지제도에 비해 신고납부제도에 납세순응을 높게 할 것이다. 가산세는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자진해서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세에 20%를 추가로 가산해서 부과한다. 이 가산세는 금융이자보다 높으므로 납세자는 가산세 부담을 면하기 위해서 납세능력이 일시적으로 없더라도 대출 등을 통해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신고납부세목 납세자는 부과고지 세목 납세자보다 납세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변수로 사용되어진 취득세, 등록세, 소득할 주민세 납세자 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대상을 취득할 때에는 여유자금이 있어 취득하는 것이므로 납세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에 대한 세제이므로 일반적으로 납세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부과지 세목으로 사용되어진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는 재산보유 또는 면허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세능력에 관계없이 보유하거나 면허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세제이므로 사업부도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해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납세능력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볼 때 신고납부제도가 부과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징세비용을 최소화하고 징수금은 극대화하기 위하여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행위로 설정된 지방세 납부방식인 신고납부제도에 대해서 부과지제도와 납세순응도를 비교하는 것이 조세의 정의나 지방세수 확충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지며, 이러한 측면에서 가설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지방세의 신고납부제도가 부과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을 것이다.

2. 지방세 신고납부세목(취득세, 등록세, 주민세)과 납세순응

신고납부제도는 징세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징수금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납부제도에 속하는 세목 모두가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할 수 없다. 세목마다 각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취득세는 과세대상을 취득하면 30일간의 기간이 있으므로 납세자는 위 기간내에 납세순응이나 조세회피를 할 수 있으며, 등록세는 등기나 등록을 하려면 등록세를 납부해야 등기나 등록이 가능하므로 조세회피요인이 취득세보다 적다고 할 수 있다. 소득할 주민세는 당해 사업년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다음해에 납부할 때에 소득세액에 10%를 주민세로 납부하는 제도로 소득발생연도와 주민세 납부시기와는 5개월의 차이가 있으므로 소득발생연도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납세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이후 사업자

의 사정변경(즉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부도 등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납세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고납부 세목에 따라 납세순응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고납부 세목간 특성으로 인하여 납세순응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가설 2을 설정하였다.

가설 2 : 지방세 신고납부세목(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특성에 따라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대상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며 과세대상이 다른 경우도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대상을 취득하거나 등기나 등록을 할 때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므로 과세대상 취득과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30일이라는 여유가 있으므로 납세자는 납세순응이나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납세자가 갖고 있다. 반면에 등록세는 등기할 때에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납세자는 납세순응이나 조세회피에 대해 취득세 납세자보다 선택권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등록세는 부동산 등을 법원에 등기할 때에나 자동차를 행정관청에 등록할 때에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고 납부하는데 다툼의 소지가 적으나 취득세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과세표준이 포괄적이어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취득세 납세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등기목적으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납세자의 사정변경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이미 납부된 등록세는 환부가 되나 취득세인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잔금지급일자가 등기와 상관없이 취득일이 되므로 잔금지급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성립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법률상 납세의무와 납세자가 인지하는 납세의무성립에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골프회원권 취득은 등기나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 납세의무는 없으나 취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재계약할 때에 다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납세자는 한번 취득하게 되면 납세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납세의무 성립에 대한 시각 차이로 인해서 납세순응

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등록세와 취득세는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성립 등에 대해서 각각 특성이 다르며, 등록세는 취득세에 비해 조세회피요인이 적으므로 다음과 같이 세부가설 2-1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 등록세는 취득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을 것이다.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과세물건 취득할 때 마다 납부하는 유통세이다. 소득할 주민세는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사업년도 다음해 5월말까지 소득세를 납부할 때에 소득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취득세는 과세물건 취득할 때에 1회에 한해서 납부하지만 소득할 주민세인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사업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그 다음해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자는 여유자금이 있어 취득하므로 담세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민세인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 이후에 신고납부하므로 사업연도 당시에는 소득이 발생하여 담세능력이 있었으나 사업자가 그 이후에 부도, 사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납세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취득세 납세자는 여유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므로 담세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주민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발생 후 최소한 5개월 이후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납세능력이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취득세가 주민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세부가설 2-2를 설정하였다.

가설 2-2 : 취득세는 주민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을 것이다.

3. 납세자의 특성과 납세순응

선행연구에서는 납세자의 특성에 해당되는 성별, 연령, 소득수준, 직업, 교육수

준 등이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납세의무성립 당시 납세자의 소득수준, 납세의식, 납세방법, 거주지, 세액에 따라 납세순응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으로 성별, 연령별에 따라서 납세순응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과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인 성별, 나이, 거주지 별에 따라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3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3 :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납세자는 과세대상을 취득하거나 또는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에 납세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납세자가 납세여부를 결정하는 변수에는 세액에 따라서 납세순응이 달라질 수 있다. 세액은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인상할 때에 세액이 높아지게 된다. 세율을 인상하면 납세자에게 세부담이 가중되므로 선행연구에서는 세율이 높을수록 납세순응도는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세율인상이나 세액의 증가는 납세자에게는 세부담이라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므로 세액이 높을수록 납세자는 조세저항을 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세액이 높을수록 납세순응은 낮아진다는 세부가설 3-1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 세액이 높을수록 납세순응도는 낮을 것이다.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으로는 성별을 들 수 있다. 성별은 시대별로 남성중심사회 또는 여성중심사회로 나눌 수 있는데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써 성별에 관계없이 직업에 맞는 전문인력을 요구하고 있어 성별구분이 없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 과거 힘을 요구하는 농경사회에서는 남성이 주류가 되는 사회였으나 현재의 사회는 전문 여성을 구하는 직장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써 여성이 사회진출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생활에서 남녀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대부분 70~80년대의 연구로써 21세기 현재 사회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현재에도 일치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가설 3-2를 설정하였다.

가설 3-2 : 여자는 남자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을 것이다.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나이는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나이가 높을수록 납세순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결과이다. 나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는 직장 등 사회생활에 적응하기도 하고 또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중장년층인 40~50대는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회에 순응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60대 이상은 직장에서 퇴직하고 노년의 삶을 사는 노년층으로서 연금수입에 의존하거나 소일거리로 직업을 얻은 연령대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납세순응측면에서 볼 때 연령대별로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세부가설 3-2를 설정하였다.

가설 3-3 : 나이가 높을수록 납세순응도는 높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과세대상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과세물건지가 거주지와 같거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물건 소재지가 납세자의 거주지와는 원거리인 경우도 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섬으로 이루어진 광역지방자치단체이므로 제주도를 왕래하려면 항공수단을 이용하거나 해상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제주도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제주도에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것은 거주 목적이 아니라 임대나 보유목적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제주도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여유의 자금을 가지고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제주도내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면 위택스를 이용한 자동이체이거나 금융기관을 이용하여야 납부가 가능하다. 현행 제주도내 지역에서는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나 제주도이외의 지역에서는 제주은행, 농협, 우체국에 한해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이유 등이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납세자의 거주지역 즉 제주도내,외 지역에 따라 납세순응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세부가설 3-4를 설정하였다.

가설 3-4 : 제주도내 거주자가 도외 거주자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을 것이다.

제2절 연구방법

1. 실증분석모형 및 검정방법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신고납부제도와 부과지제도에 따라 납세순응도 차이, 신고납부 세목 특성에 따라 납세순응도 차이,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가설검정을 위한 모형을 설정하고 검정방법을 제시한다.

1) 가설1에 대한 연구모형1 설계

가설1은 신고납부제도가 부과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는 가설이다. 모형1은 가설에 따라 신고납부제도와 부과지제도 중에서 어떤 납부방식이 납세순응도가 높은 가를 비교하였으며, 통제변수로 성별과 나이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나이 변수에 대해서는 민법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성년시기에 대해서는 만 20세가 되어야 하며,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세이하는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나이는 세 집단으로 분류하되 사회에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20~30대를 한 집단으로 하고, 사회에 순응하고 직장에서 최고의 연령층에 해당되는 중장년층인 40~50대를 한 집단으로 하고, 직장에서 퇴직하고 퇴직이후의 삶을 사는 노년층에 해당되는 60대이상을

한 집단으로 하였으며, 모형1에 대한 설계는 다음과 같다.

[모형 1]

$$Y = \alpha + \beta_1 \text{SINGO} + \beta_2 \text{SEX} + \beta_3 \text{AGE 21_39} + \beta_4 \text{AGE 60} + e$$

여기에서 SINGO : 신고방식(신고납부 1, 부과고지 0으로 코딩, 기준변수는 부과고지 기준)

SEX : 성별(남자 1, 여자 0으로 코딩, 기준변수는 여자)

AGE 21_39 : 나이 (21세이상 39세 미만자는 1, 그 외 나이는 0으로 코딩)

AGE 60 : 나이(60세 이상은 1, 그 외 나이는 0으로 코딩, 기준 변수는 40-59세 기준)

2) 가설2에 대한 연구모형2 설계

가설2은 ‘신고납부세목의 특성에 따라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모형을 설계하였다. 모형은 신고납부 세목간에 납세순응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중 취득세를 기준변수로 하였으며, 통제변수로 성별과 나이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모형 2]

$$Y = \alpha + \beta_1 \text{JUMIN} + \beta_2 \text{DEUNG} + \beta_3 \text{SEX} + \beta_4 \text{AGE 21_39} + \beta_5 \text{AGE 60} + e$$

여기에서 JUMIN : 세목 (주민세 1, 주민세 이외자료 0으로 코딩)

DEUNG : 세목 (등록세 1, 이외자료 0으로 코딩)

SEX : 성별 (남자1, 여자 0으로 코딩)

AGE 21_39 : 나이(21세이상 39세 미만자는 1, 이외자료 0으로 코딩)

AGE 60 : 나이(60세 이상 1, 이외자료 0으로 코딩)

3) 가설3에 대한 연구모형3 설계

가설3은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모형3을 설계하였다. 납세자의 특성은 세액별, 성별, 나이별, 거주지별 4개의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통제변수는 6개의 세목(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이며 이중 기준변수는 재산세이다)을 사용하였다. 세액은 상위 2%내외

인 100만원이상 납세자, 상위 20%내외인 1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납세자, 세액 분포가 80%내외인 10만원 미만 납세자 등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성별은 남녀로, 나이는 20~30대, 40~60대, 60대이상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납세자의 거주지역인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경우가 제주도에외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지방세를 납부하는데 접근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에서 거주지역을 제주도내와 제주도의외 두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모형 3]

$$Y = \alpha + \beta_1 \text{TAX}_{10_100} + \beta_2 \text{TAX}_{100} + \beta_3 \text{SEX} + \beta_4 \text{AGE}_{21_39} + \beta_5 \text{AGE}_{60} + \beta_6 \text{OUT} + \beta_7 \text{CHI} + \beta_8 \text{DEUNG} + \beta_9 \text{JUMIN} + \beta_{10} \text{JA} + \beta_{11} \text{MEON} + e$$

여기에서 TAX 10_100 : 세액 (1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 1, 이외 자료 0으로 코딩)

TAX 100 : 세액 (세액 100만원이상 1, 이외자료 0으로 코딩, 기준변수 세액 10만원미만자)

SEX : 성별 (남자, 1, 여자 0으로 코딩, 기준변수는 여자)

AGE 21_39 : 나이 (21세이상 39세 1, 이외자료 0으로 코딩)

AGE 60 : 나이 (60세이상 1, 이외자료 0으로 코딩, 기준변수는 40-59세)

OUT : 거주지 (도외거주자 1, 도내거주자 0으로 코딩, 기준 변수는 도내거주자)

CHI : 세목 (취득세 1, 이외자료 0으로 코딩, 기준변수는 재산세)

DEUNG : 세목 (등록세 1, 이외자료 0으로 코딩)

JUMIN : 세목 (주민세 1, 이외자료 0으로 코딩)

JA : 세목 (자동차세 1, 이외자료 0으로 코딩)

MEON : 세목 (면허세 1, 이외자료 0으로 코딩)

4)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납세순응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납세순응도는 신고납부 세목인 경우에는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납세순응을 하는 것으로 보며, 부과고지 세목인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납기를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면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상 납기

내에 납부하면 납세순응을 하는 것으로 보아 “1”로 코딩하고,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독촉이나 체납활동을 통해서 납부를 하거나 미납하는 경우에는 납세불순응하는 것으로 보아 “0”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이하 MLE라 한다)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분석은 (B)값이 (+)이면,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이면 납세순응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2. 표본선정

선행 연구에서 보았듯이 납세순응이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보면 주로 데이터는 납세자의 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 방법을 통하여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결과는 심리적인 상태를 반영한 것이므로 신뢰성에 의문이 되어 일반화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에서 2008년도에 지방세를 부과하고 납부하였던 실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과세자료는 지방세 부과를 목적으로 하여 정보를 수집한 것이므로 납세순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세는 16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정된 세목은 <표 3-1>에 보는 바와 같다.

〈표 3-1〉 지방세의 세목 및 선정 세목

세목별	신고납부	부과고지	선정세목		제외 사유
			신고	부과	
취득세	○		●		
등록세	○		●		
주민세	○	○	●		· 균등할, 법인세할 제외
재산세		○		●	
자동차세		○		●	
면허세	○	○		●	· 수시신고제외
레저세	○				· 납세자 법인
공동시설세		○			· 재산세 병기고지
지역개발세	○				· 납세자 법인
주행세	○				· 납세자 법인
농업소득세	×				· 과세중단
도축세	○				· 납세자 법인
담배소비세	○				· 납세자 법인
도시계획세		○			· 재산세 병기고지
사업소세	○				· 납세자 소수
지방교육세	○	○			· 세목에 따라 납세다름

신고납부세목에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지역개발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등 9개 세목이며, 부과고지세목은 재산세, 공동시설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등 4개의 세목이며, 나머지 면허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등 3개의 세목은 신고납부와 부과고지가 그 과세대상에 따라 신고납부세목과 부과고지세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서 제외되는 세목은 레저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지방교육세이며, 제외한 이유는 납세자가 법인 또는 소수인 경우와 다른 세목에 병기하여 부과하는 세목에 해당되므로 분석을 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따라서 신고납부세목중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주민세 중에서 균등할 주민세는 부과고지 대상이므로 제외하였으며, 법인세할은 납세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부과고지세목은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 3개의 세목에 대해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주요 신고납부세목 3개와 부과고지 세목 3개 세목 총 6개의 세목에 대한 납세인원은 〈표 3-2〉와 같다.

〈표 3-2〉 주요 지방세 세목별 납세인원

(단위 : 명, %)

구분	세목별	납세인원	비율
합계		1,255,418	100
신고납부	소계	278,904	22.2
	취득세	64,066	5.1
	등록세	159,172	12.7
	주민세	55,666	4.4
부과고지	소계	976,514	77.8
	재산세	583,518	46.5
	자동차세	347,729	27.7
	면허세	45,267	3.6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 주요세목에 대한 2008년도 부과한 납세인원은 취득세 등 6개 세목 1,255,418명이며 자료를 선정하기 위해서 납세자 번호로 대상을 추출한 후에 납세자 구분 필드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내국인 중 거주자로 제한하였다. 납세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한명만 추출하였다. 세목 중 주민세에 대해서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선정하였다. 변수에 사용되어진 납세자는 미성년자인 20세이하는 제외하였다. 또한 면허세 최저세액이 3,000원이므로 다른 세목과 세액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최저세액을 일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다른 세목도 3,000원이상자만 발취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49,712명을 최종 변수로 확정하였다. 이중에서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는 77.6%에 해당되는 193,773명이고, 성실하게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22.4%에 해당되는 55,939명이다. 신고납부와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3-3〉과 같다.

〈표 3-3〉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세목별	계	납부	미납	비고
합계		249,712(100%)	193,773(77.6%)	55,939(22.4%)	
신고납부	소계	76,152(100%)	65,641(86.2%)	10,511(13.8%)	
	취득세	39,065(100%)	34,736(88.9%)	4,329(11.1%)	
	등록세	20,292(100%)	19,931(98.2%)	361(1.8%)	
	주민세	16,795(100%)	10,974(65.3%)	5,821(34.7%)	
부과고지	소계	173,560(100%)	128,132(73.8%)	45,428(26.2%)	
	재산세	118,430(100%)	98,632(83.3%)	19,798(16.7%)	
	자동차세	47,298(100%)	25,348(53.6%)	21,950(46.4%)	
	면허세	7,832(100%)	4,152(53.0%)	3,680(47.0%)	

이를 나이별·성별·거주지별·세액별로 보면 〈표 3-4〉와 같다. 세액별로 보면 10만원 미만은 79.4%에 해당되는 198,245명, 1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은 46,703명으로 18.7%, 100만원 이상 납세자는 1.9%에 해당되는 4,764명이다. 성별로는 여자는 전체의 40.6%에 해당되는 101,294명이며, 남자는 59.4%에 해당되는 148,418명이다. 나이별로 보면 21~39세까지가 58,535명으로 23.4%를 차지하고 있고, 40~59세까지가 130,769명으로 52.4%, 60세이상인 60,408명으로 전체의 2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납세자 거주지별로 보면 도내거주자는 전체 납세자의 81.9%에 해당되는 204,431명이며, 도외거주자는 18.1%에 해당되는 45,281명이다. 연령·성별·거주지 및 세액별 현황은 〈표 3-4〉와 같다.

〈표 3-4〉 연령·성별·거주지 및 세액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세액별	10만원미만	198,245	79.4
	10만원~100만원미만	46,703	18.7
	100만원이상	4,764	1.9
성별	여	101,294	40.6
	남	148,418	59.4
나이	21~39세	58,535	23.4
	40~59세	130,769	52.4
	60세이상	60,408	24.2
거주지	제주도내 거주자	204,431	81.9
	제주도외 거주자	45,281	18.1

제4장 실증분석 및 결과

본 제4장에서는 표본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기술하고, 가설검정을 하였다.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항 로지스틱 분석 방법이 사용되었다.

제1절 기술통계

기초 통계량에서는 변수에 해당되는 최대값, 최소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1) 나이 기술통계

나이별 기술 통계는 <표 4-1> 과 같다. 납세자의 나이는 21세부터 100세까지이다. 20세이하는 미성년자로서 제외하였다.

<표 4-1> 나이 기술 통계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나이	249,712	21	100	50	13.223

2) 세액별 통계

납부 및 미납별 세목별 세액 통계는 <표 4-2> 와 같다. 세액은 면허세가 최저 3,000원으로 세목별 비교를 하기 위하여 다른 세목 중 세액이 3,000원이하는 제외하였다. 최고 금액은 주민세로서 151,569,780원이다.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로써 국세인 소득세액에 10%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득세에 따라 주민세 변동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 최고액은 80,000,000원이다. 취득세와 등록세 세액이 같은 것은 취득세는 세율이 2%이며, 등록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 세율이 있으나 최고세율은 2%로 취득세와 세율이 같으므로 최고세액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면허세는 면허당 최고 세액이가 30,000원이나 5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납세자가 2~3개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표 4-2〉 납부 및 미납별 세목별 세액 통계

구분	세목	N	최대값	평균	최소값	표준편차	
납부	신고납부	취득세	34,736	80,000,000	316,920	3,000	1092824.179
		등록세	19,931	80,023,420	242,854	3,000	1215155.884
		주민세	10,974	30,108,050	256,981	3,000	1023051.413
	부과고지	재산세	98,632	19,022,080	52,227	3,000	155290.576
		자동차세	25,348	506,880	77,943	3,040	48991.211
		면허세	4,152	50,000	9,912	3,000	4814.096
미납	신고납부	취득세	4,329	46,233,500	255,253	3,000	1054317.291
		등록세	361	7,006,440	302,885	3,000	664598.768
		주민세	5,821	151,569,780	285,558	3,000	2250659.686
	부과고지	재산세	19,798	4,508,390	39,414	3,000	88971.965
		자동차세	21,950	640,650	88,257	3,000	66418.652
		면허세	3,680	30,900	11,333	3,090	6421.175

거주지별 신고납부와 부과고지에 대한 세액 통계는 〈표 4-3〉 과 같다. 신고납부는 도내거주자가 최고의 세액(151,569,780원)이며, 부과고지는 도외주거주자가 최고의 세액(19,022,080원)이다.

〈표 4-3〉 거주지별 신고납부와 부과고지에 대한 세액 통계

구분	거주지별	N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 편차
신고납부	도내거주자	66,933	151,569,780	3,000	220,562	1012659.545
	도외거주자	9,219	80,000,000	3,000	7,357,255	2237338.178
부과고지	도내거주자	137,498	6,550,790	3,000	57,770	88057.344
	도외거주자	36,062	19,022,080	3,000	55,017	216134.142

성별에 따른 세액 통계는 〈표 4-4〉 과 같다. 여자 납세자 평균세액은 114,829 원이며, 남자 납세자는 133,686원으로 세액 평균적으로 볼 때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세액이 높다. 반면에 세액 최대값은 남자 납세자가 여자 납세자보다 높다.

〈표 4-4〉 성별에 따른 세액 통계

성별	N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 편차
여자	101,294	80,023,420	3,000	114,829	577665.703
남자	148,418	151,569,780	3,000	133,686	772441.839

제2절 가설검정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하여 가설설정과 모형을 설계한 후에 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이항로지스틱분석을 이용하였으며 가설별 검정결과를 제시한다.

1. 지방세 납부방식과 납세순응

지방세 납세제도 중 납세자가 스스로 세율, 세액 등을 신고납부하는 세목과 과세관청이 부과세액을 결정하고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는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제도에 속하는 세목 중에서 과세대상이 일치하는 신고납부제도에 속하는 세목인 취득세와 부과고지제도에 속하는 세목인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변수로 하였다.

분석결과 <표 4-5>와 같이 우도비가 92322.8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자체의 적합도를 설명하는 모델 카이자승값은 13808.97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납부제도가 부과고지제도에 비교하여 납세순응도를 비교분석할 결과 신고납부에 대한 회귀계수가 (+)로 나타나고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신고납부제도가 부과고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납부세목은 납세자의 높은 협력을 얻어 징세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징수금은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도입된 세제이므로 신고납부제도가 부과고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표 4-5> 납부방식에 따른 가설1 검정

변 수		β	S.E.	Wald	유의 확률	Exp(B)
납부방식	신고납부	1.132	0.017	4264.023	0.000	3.101
성별	남 자	-0.099	0.011	79.000	0.000	0.906
나이	21-39세	-0.363	0.013	842.136	0.000	0.696
	60세이상	0.669	0.015	2033.400	0.000	1.952
상수		1.084	0.010	11568.695	0.000	2.956
모형 적합도		-2 Log Likelihood 92322.8(p=0.000) Model Chi-Square 13808.97(p=0.000)				

주) 납부방식 : 기준변수는 부과지 세목(부과고지 0, 신고납부 1)
 성별 : 기준 변수는 여자 기준(여자 0, 남자 1)
 나이 : 기준 변수는 40-59세 기준

<표 4-5> 납부방식에 의한 가설1 검정에 사용된 변수는 신고납부세목은 취득세, 부과지 세목은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에 1회에 한해서 납부하는 세목이고,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매년마다 납부하는 세제이므로 취득시 과세되는 세목과 보유시 과세되는 세목에 의한 비교 검정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고납부세목인 취득세에 매년마다 신고납부 하는 주민세를 신고납부세목에 포함하고, 부과지 세목은 매년 부과하는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변수로 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검정한 결과는 <표 4-6>와 같다. 추가분석 결과를 보면 신고납부에 대한 회귀계수가 (+)로 나타나고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신고납부제도가 부과고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를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와 부과지 세목인 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분석한 결과와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및 주민세와 부과지 세목인 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분석한 결과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4-6> 납부방식에 가설1 추가 검정

변 수		β	S.E.	Wald	유의확률	Exp(B)
납부방식	신고납부	0.497	0.013	1579.251	0.000	1.644
성별	남 자	-0.053	0.010	25.631	0.000	0.949
나이	21-39세	-0.294	0.012	619.810	0.000	0.745
	60세이상	0.604	0.014	1902.112	0.000	1.830
상수		1.051	0.010	11969.032	0.000	2.859

주) 신고납부 세목(취득세, 주민세)과 부과지 세목(재산세, 자동차세)를 비교함

본 연구 분석결과 신고납부제도가 부과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는 이유는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신고납부제도에 속하는 세목 납세자가 부과지제도에 속하는 세목납세자보다 담세력이 높으므로 신고납부제도가 부과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납세자는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을 매수할 때에 여유자금이 있어 취득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부과지제도는 보유사실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로 보유사실 그 자체에 중점을 두어 과세하므로 담세능력에 상관없이 과세되고 있다. 신고납부제도에 속하는 세목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거나 등록할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부과지에 속하는 세목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매년 과세기준일을 정해서 부과하는 세목이다. 즉 신고납부 세목의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여유자금이 있으므로 담세력이 있는 반면 부과지에 속하는 세목의 납세자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므로 부과대상에 속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그 자체로 수익창출이 가능하나 이미 그 과세대상 물건이 저당권 설정 등으로 납세자가 납부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고납부세목의 납세자가 부과지 세목의 납세자보다 담세능력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신고납부제도가 납세순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신고납부제도에 속하는 세목 납세자는 부과지제도에 속하

는 세목 납세자보다 납세순응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 신고납부제도는 가산세 등 제재가 강하므로 신고납부제도가 부과고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신고납부 세목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세법령에서 정해진 기한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즉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중과세 대상(회원제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은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세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에서 정한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이러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벌칙으로 가산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의 20%가 가산(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제1호 참조)되며, 기한 후 신고제도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50% 경감되고 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과세권자가 부과고지를 확정할 때까지 지연 기간에 대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되는데 1일 10,000분의3이 부과되고 있다.(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제2호 참조). 또한 취득세 납세자가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2년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80%의 가산세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가산세 제도는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내 신고납부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부과고지 세목처럼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납기가 경과하여도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고지 세목의 납세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것처럼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반면에 부과고지제도는 가산세라는 제도가 없으며, 가산금과 증가산금이 부과되고 있다.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은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가산금을 부가하여 독촉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지방세에 매1월이 경과할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60개월까지 부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증가산금은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납부세목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납부일자에 따라 부과하며 1일 10,000분의 3)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며, 납세자가 일정한 기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납기를 정하여 부과지로 전환하며, 부과지로 전환하여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가산금이 가산되어 부과된다. 부과지 세목인 경우에는 가산금 부담만 되므로 납세자의 측면에서 볼 때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신고납부제도가 부과지제도에 비해서 순응할 밖에 없다.

2. 지방세 신고납부세목과 납세순응

1) 등록세와 취득세의 납세순응도 차이

지방세 신고납부제도가 부과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하는 가설은 가설1 분석결과 채택되었다. 신고납부제도가 부과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해서 신고납부제도에 속하는 세목 모두가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신고납부세목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기준 세목은 취득세로 하였다.

분석결과 <표 4-7>와 같이 우도비가 52328.4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자체의 적합도를 설명하는 모델 카이제곱값은 8801.08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납부세목인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 납세순응도를 비교분석할 결과 등록세에 대한 회귀계수가 (+)로 나타나고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등록세가 취득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세가 취득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하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표 4-7> 신고납부 세목별 납세순응도 차이에 따른 가설 2 검정

변 수		β	S.E.	Wald	유의확률	Exp(B)
세목 별	등록세	1.863	0.056	1117.108	0.000	6.445
	주민세	-1.512	0.024	4073.793	0.000	0.220
연령	남 자	-0.023	0.023	0.961	0.327	0.977
나이	21-39세	-0.223	0.026	71.984	0.000	0.800
	60세이상	0.239	0.031	57.826	0.000	1.270
상수		2.147	0.025	7204.207	0.000	8.558
모형 적합도		-2 Log Likelihood 52328.4(p=0.000) Model Chi-Square 8801.08(p=0.000)				

주) 세목별 : 기준변수는 취득세
 성 별 : 기준 변수는 여자 기준
 나 이 : 40-59세 기준

본 연구 분석결과 등록세가 취득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취득세는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나 등록세는 조세를 회피할 요인이 적기 때문에 등록세가 취득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취득세는 과세대상을 취득한 후에 즉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30일간의 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 납세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이미 취득하였던 과세대상을 매각하는 등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에 등록세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법원에 등기나 행정관청에 등록을 할 수 있고, 또한 등록세 납세자는 등기나 등록을 하기 전에 대부분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법무사가 등기비용을 청구할 때에 등록세도 함께 청구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요인이 취득세보다 적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등록세의 과세대상은 명확하나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포괄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나 법원이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득세 납세자가 과세대상을 알지 못하여 납세순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등록세가 취득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등록세의 과세대상은 등기나 등록대상이 될 때에 한해서 등록세를 납부하나 취득세에 대해서는 과세권자와 납세자가 의견

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송전철탄을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는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대법원(2009. 9. 10.선고, 2009두5343판결)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있는 대부분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당연히 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표 4-8> 2008년 취득세 과세대상별 신고납부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대상별로 납세순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과점주주에 대한 신고납부율이 가장 저조한 것은 과점주주가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알지 못하여 신고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8> 2008년 취득세 과세대상별 신고납부율

과세대상	토지	건물	주택	차량	기계 장비	선박	골프회 원권	콘도 회원권	과점 주주
납세순응율 (%)	82.3	76.5	84.5	87.5	85.5	88.9	92.2	97.9	42.9

주) 제주도, 2008년도 내부자료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 된 후에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등록세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등록세는 등기나 등록행위를 하는 경우에 납부하므로 실령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등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자에게 환부하게 된다. 그러므로 등록세는 과세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취득세보다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등록세는 등기나 등록을 하여야만 납세의무가 있으나 취득세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대부분 납세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어 취득세 납세순응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가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

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2.9 선고 99두 5955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즉 취득세는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였으면 등기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있으며, 또는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제2호에서는 개인간에 거래에 의한 유상승계 취득인 경우에는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단서 조항에 취득후(여기서 취득 후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을 말한다)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개인간의 거래는 사실상 잔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가 인지하고 있어야 하나 대부분 부동산 등기를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도자·매수자가 내부적으로 계약해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는 등록세 납세의무는 없지만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므로 취득세 납세순응도가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등록세가 과세되는 등기,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취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있어 취득세가 납세순응도가 낮아진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공통적인 과세대상인 경우에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세가 납세순응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록세도 납세순응을 하지 않아서 납세순응이 높고 낮음을 비교할 수 없으나 등기나 등록대상이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만 해당되고 여기에 과세표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대부분이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의 규정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어 취득비용에 소요된 직접 비용은 물론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간접비용을 어느 경우까지 포함할 것인가가 다툼이 예상이 되며, 이러한 과세표준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순응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송전철탑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해서 소송쟁점사항이 되었는데 대법원(2009. 9. 10. 선고, 2009두5343판결)에서는 진입도로 공사비, 식도장·헬기장 공사비, 훼손지 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은 송전철탑 설치공사의 특성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거나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의 송전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이므로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과세대상별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마련하지 아니하는 한 납세순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 취득세와 주민세의 납세순응도 차이

‘취득세가 주민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라는 가설에 대한 검정결과는 <표 4-7>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민세의 계수가 (-)이며, 통계적으로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서 취득세가 주민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 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취득세가 주민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은 이유는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에 1회에 한해서 납부하는 세목으로 과세대상을 취득한다는 것은 여유자금이 있다는 의미로 담세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주민세는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그 다음해 5월에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 소득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게 되므로 사업연도 기간에는 소득이 발생하여 납세능력이 있었으나 사업연도 종료후 5개월 되는 시점에서는 납세자가 부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취득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2-4> 세목별·사유별 체납액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세 체납액은 3,441,091천원으로 체납사유는 거소불명 142,076천원(비율 4.13%), 무재산 771,286천원(비율22.41%), 고질체납자 263,299천원(비율 7.65%), 체납자가 납부하지 못하고 후순위 채권으로 과세권자가 압류한 경우는 2,151,807천원(비율 62.54%),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체납액이 112,623천원(비율 3.27%)이다. 체납액 중 고질체납자 7.65%를 제외한 나머지 92.35%가 주민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결손처분 현황은 <표 2-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결손액 6,773,831천원중 주민세 결손처분 비율이 32.57%인 2,205,935천원으로 세목 중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주민세를 부과지 하였으나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1,266,724천원으로 57.4%를 차지하고 있다. 위와 같이 주민세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제로 소득발생은 납세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나 사업연도 종료 후에 무재산, 거소불명, 부도, 시효완성 등 사유는 주민세 납세자가 납세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3. 납세자의 특성과 납세순응

선행연구에서 납세순응이나 조세회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납세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특성을 세액과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인 성별, 나이, 거주지별에 따라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4-9> 와 같다. 우도비가 234504.74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자체의 적합도를 설명하는 모델 카이자승 값은 31159.6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세액과 납세준응도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중 세율 변수 대신 세액변수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면 세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율 대신 세액이라는 대용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세율을 인상하면 납세준응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세액이 높음에 따라 납세준응도가 낮아질 것이라든가 가설을 설정해서 세액을 세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세액 1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 집단은 세액 10만원미만 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액 100만원이상 집단은 세액 10만원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액이 높을수록 납세준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세율을 인상하면 납세준응도가 낮아진다는 결과와 반대결과를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선행연구는 실험적 연구로써 납세자에게 세율을 인상하면 조세회피를 할 것인가, 납세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써 납세자는 세율을 인상하면 그 세율 인상이 납세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납부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조세를 회피하려는 방향으로 결정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납세자에게 지방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 등 부담은 물론 부동산압류 또는 출국금지 등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납세자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지방세를 납부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세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납세 불준응을 할 경우에 가산세 등 제재가 세액이 고액보다 약하므로 납세자는 경제적 이익이 되는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 납세자가 10만원미만 소액인 경우에는 가산세는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징수에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초과압류의 금지원칙을 규정(국세징수법 제33조의2)하고 있어 과세권자는 고액채납자보다 강력한 채납처분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고액·상습채납자(지방세법제69조의2에서 채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하고 1억원이상 채납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명단을 대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5천만원이상 채납자는 출국금지요청(국세징수법제7조의4), 500만원이상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회사에 자료 제공

(국세징수법제7조의2)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액보다는 납세자에게 경제적·심리적 또는 신체적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세액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2) 성별과 납세순응도

성별은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로써 성별에 따라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여자를 기준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남자에 대한 계수가 (-)로 나타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남자는 여자보다 납세순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대부분 남자가 여자보다 납세순응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설문자료에 의한 연구와 실제 자료에 의한 연구결과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보다 여자가 납세성실성을 향상시키는 보수의 생활양식, 도덕적 제약, 규칙 등에 익숙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여자가 생활능력이 강하여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이 높기 때문에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나이와 납세순응도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인구통계학적인 변수 중 나이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나이를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즉 21~39세, 40~59세, 60세이상으로 분류하고 기준변수는 나이 40~59세로 하였다. 분석결과 나이 21세~39세이하 집단은 계수가 (-)로 나타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나이 40~59세이하 집단보다 납세순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나이 60세이상 집단은 계수가 (+)로 나타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나이 60세이상 납세자가 나이 40~59세이하 납세자보다 납세순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연령이 높을수록 납세순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연구결과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로 보면 20~30대는 사회제도에 순응하기 보다는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로서 사

회제도에 때로는 저항하기도 하며, 순응하기도 하므로 일반적으로 볼 때 연령이 높은 집단보다 납세순응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나이가 높을수록 사회제도에 순응하기 때문에 납세에 대해서도 순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납세자의 거주지역과 납세순응도

납세자가 제주도내·외 거주 여부에 따라 납세순응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외거주자의 계수가 음(-)으로 나타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내 거주 납세자가 제주도의 거주한 납세자보다 납세순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에 대한 납부방법은 제주도내에서는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나 제주도이외의 지역에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주은행, 농협, 우체국에 한해서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내 거주 납세자가 제주도의 거주 납세자보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에서 접근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9> 납세자의 특성에 따른 가설 3 검정

변 수		β	S.E.	Wald	유의확률	Exp(B)
세액	10~100만원	0.019	0.014	2.007	0.157	1.020
	100만원이상	0.178	0.048	13.515	0.000	1.195
성별	남자	-0.043	0.011	16.767	0.000	0.958
나이	21-39세	-0.072	0.012	34.072	0.000	0.930
	60세이상	0.385	0.014	754.658	0.000	1.469
거주지	도외거주자	-0.116	0.015	62.007	0.000	0.891
세 목 별	취득세	0.533	0.019	784.630	0.000	1.704
	등록세	2.421	0.054	2024.170	0.000	11.256
	주민세	-0.978	0.019	2689.803	0.000	0.376
	면허세	-1.437	0.024	3472.393	0.000	0.238
	자동차세	-1.381	0.014	10441.129	0.000	0.251
상수		1.552	0.012	17262.740	0.000	4.723
모형 적합도		-2 Log Likelihood 234504.74(p=0.000) Model Chi-Square 31159.6(p=0.000)				

- 주) 세액 : 기준변수는 10만원미만 기준
 성별 : 기준변수는 여자 기준
 나이 : 기준변수는 40-59세 기준
 납세자 거주지 : 기준 변수는 도내거주자 기준
 세목 : 기준변수는 재산세 기준

4. 가설검정 결과 요약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1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방식이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신고납부제도가 부과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2에서는 신고납부 세목 특성에 따라 납세순응도 차이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등록세가 취득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고, 취득세는 주민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3에서는 납세자의 특성이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세액은 3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세액 10만원 미만 집단을 기준변수로 하여 검정한 결과 세액 1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 집단은 세액 10만원미만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액 100만원이상 집단은 세액 10만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자는 남자보다 납세순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석은 나이를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나이 21세~39세이하 집단은 나이 40~59세이하 집단보다 납세순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 60세이상 납세자는 나이 40~59세이하 납세자보다 납세순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높을수록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제주도내 거주자인 납세자가 도외에 거주하는 납세자보다 납세순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요약정리하면 <표 4-10>과 같다.

<표 4-10> 가설 검정 결과 요약

구 분	가 설	검정
가설1	· 신고납부제도가 부과지제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가설2	· 신고납부세목 특성에 따라 납세순응도 차이 1) 등록세가 취득세가 납세순응도가 높을 것이다. 2) 취득세가 주민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채택
가설3	· 납세자의 특성에 따른 납세순응도 차이 1) 세액이 높을수록 납세순응도는 낮을 것이다 2) 여자가 남자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을 것이다. 3) 나이가 높을 수록 납세순응도가 높을 것이다. 4) 도내 거주자가 도외거주자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채택 채택 채택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건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확충이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세수를 확충하면서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하였다.

지금까지 납세순응이나 조세회피는 국세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방법도 대부분 납세자의 인지를 통한 설문지 방식으로 연구하여 연구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였던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납세자의 높은 협력을 얻어 징세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징수금을 극대화하는 조세행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된 신고납부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신고납부세목이라고 하더라도 세목마다 각각 특성이 다르므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세목마다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며, 납세자의 특성인 세액, 성별, 나이, 거주지별에 따라 납세순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이항로지스틱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제도에 대해서 납세순응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신고납부제도가 부과고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납부제도가 납세순응도가 높은 이유는 신고납부제도가 부과고지제도보다 담세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신고납부제도가 납세자의 측면에서 볼 때 부과고지제도보다 가산세 부담이라는 벌칙조항이 있으므로 납세순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방세 신고납부세목 중에서도 세목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신고납부세목간 납세순응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등록세는 취득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으며, 취득세는 주민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세가 취득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은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할 때까지 등록세를 납부해야 등기나 등록이 가능하므로 조세회피 요인이 적고,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30일까지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등록세보다 조세회피 요인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등록세는 취득세에 비해 납세의무 성립, 과세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취득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취득세가 주민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은 이유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에 이미 담세능력이 있으나 주민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당해 사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담세능력이 있었으나 사업연도 종료 후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담세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가 주민세의 납세순응도를 낮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세액에 따라 납세순응도 분석을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세액 10만원 미만 집단을 기준변수로 하여 검정하였다. 검정결과 세액 1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 집단은 세액 10만원미만 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세액 100만원이상 집단은 세액 10만원미만 집단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이 높을수록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은 세액이 높은 납세자가 체납할 경우에는 출국금지,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공개 등 소액인 납세자보다 경제적·신체적·심리적 제재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에 따라 납세순응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이 여인 납세자가 성별인 남인 납세자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에서도 대부분 여자가 남자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유는 사회참여율이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는 이유에 의한 결과이기 보다는 남자와 여자의 생리학적인 구조에서 오는 사회에 적응하는 순응에 차이가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이유는 제주도는 여자의 생활능력이 타시도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생활능력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경제적인 여유는 곧 납세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결과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나이에 대해서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나이 21세~39세이하 집단은 나이 40~59세이하 집단보다 납세순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 60세이상 납세자가 나이 40~59세이하 납세자

보다 납세순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제주도내 거주자인 납세자가 도외에 거주하는 납세자보다 납세순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내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제주도의 지역의 납세자보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은행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하였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인지를 이용한 설문지 방법으로 연구한 결과로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의문시 되었으나 본 연구는 실제 부과하였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므로 매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납세자가 제도적으로 납세순응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에 대해서 분석하여 납세순응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납세순응 제고를 통하여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납세를 통하여 조세를 정의의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고납부제도가 납세순응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인지 여부와 신고납부세목도 세목의 특성에 따라 납세순응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한다.

첫째, 국가가 지방세 납부방식을 세목별로 신고납부제도로 정할 것인가 부과지제도로 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의 고도의 조세윤리와 높은 지방세에 대한 지식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납부방법이므로 부과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을 것을 전제로 한다. 분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납부제도가 부과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납세자의 높은 협력을 얻어 징세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징수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도입된 신고납부제도가 그 정책적인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과지제도에 속하는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세목으로 전환하거나 부과지제도에 일부 신고납부제도를 병행하여 납세순응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 납세순응도를 세목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등록세, 취득세, 주민세 순으로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납세의무성립 여부, 과세대상, 과세표준 등 세목 특성에 따라 납세순응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특성만이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납세순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등록세 납세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등기나 등록이 가능하므로 등록세는 제도적으로 납세순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정이다.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부 규정을 취득세 세목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취득세 과세대상이 등기·등록을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등기나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한다면 납세순응도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또는 등록세와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취득세는 세율조정을 하면서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면 자연히 납세순응도는 높아지게 된다.

주민세인 경우에는 국세인 소득세 납부시기와 같이 사업연도 종료 후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납세자가 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때에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신설하게 되면 납세자는 납세편의를 도모할 것이며, 과세관청은 현행 이원화되어 있는 징수와 체납활동을 한 기관에서 하므로 징세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2009년 정기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징수활동과 체납활동은 모두 국가에서 하므로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납세순응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과지제도에 해당되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서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납부를 독려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대중세라고 한다. 이러한 대중세에 대해서는 납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납부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송인 경우에는 시청율이 높은 시간대를 이용하여 홍보하면 납세순응도가 제고될 것이다.

둘째, 성실납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조세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하거나 미래의 납세자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세무교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중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서 교육수준, 동료 영향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납세순응요인으로 작용하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였으나 분명한 것은 세법에 대한 오해를 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순응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에 대한 교육을 초·중 과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어린이 지방세 세무교실을 운영하는 것과 같이 미래 납세자에게 지방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체계를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1949년도에 제정되고 1961년도에 전부 개정된 이후 잦은 부분 개정으로 복잡성 및 난해성이 가중되어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취득시기 등을 해석하는데 과세관청과의 의견이 많으므로 이를 단순한 조세체계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알기 쉬운 지방세법 개정은 납세자가 지방세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자발적인 납세순응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세에 대한 납부를 현금외 다양한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는 납부방법을 현금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에 정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체기간을 연장하여 수수료 부담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납세자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납세자는 지방세를 납부하는데 편리할 수 있으므로 납세순응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방세 신고방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는 국세처럼 전자로 신고할 수 있는 있는 제도가 없다. 그 이유는 신고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서 등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으나 매매계약서등은 검인계약을 하는 부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보완방법이 있으므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납세의무는 헌법에서 정한 의무이기는 하나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협력 없이는 납세순응을 기대할 수는 없다. 민간기업에서도 납부방법을 자동이체로 하거나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포인트 점수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 조기납세자, 제납액 없는 마을을 선정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있어,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자동이체나 전자과지하는 경우에는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것이 납세자의 협력을 얻을 수 있고 이는 곧 납세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필요한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연구한계 및 연구과제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제주도에서 과세하였던 실제자료를 이용한 가치는 크다 하겠으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한계로 본 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하였던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첫째 자료 수집의 한계로 전국에서 실제 과세하였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지 못하고 제주도에 한정된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주도의 과세자료는 자료의 접근성이 타 지역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석된 결과가 전국 자료에서 분석된 결과와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연구과제는 전국에서 실제 지방세를 과세하였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분석이 될 것이다.

둘째, 지방세 과세자료는 지방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이므로 과세에 필요한 자료만 수집하였으므로 변수를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지방세 과세자료와 행정기관에서 수집되어진 직업,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을 연계하여 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한다면 현재보다 나은 연구결과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1. 국내문헌

- 곽태원(2002), 「조세론」, 법문사.
- 권강웅(2007), 「축소 지방세 해설」, 조세통람사.
- 김렬외(2008), 「통계분석의 이해 및 활용」, 대명.
- 김의효(2009), 「지방세 실무」, 한국지방세연구회.
- 김완석(2006), 「조세법 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김준호(2001), 「민법강의」, 법문사.
- 김태호(2009),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 박우서(2000), 「지방세부과·징수체계와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여운승(2000), 「사회과학과 마케팅을 위한 다변량 행동조사」, 민영사.
- 유민봉(2006), 「한국 행정학」, 박영사.
- 이성우외(2005), 「로짓프로빗 모형 응용」, 박영사.
- 이학식외(2004), 「SPSS 10.0 매뉴얼」, 법문사.
- 전동훈(2008), 「2008년 지방세 실무」, 행정안전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 최명근(2006), 「세법학 총론」, 세경사.
- 한재명·유태현(2006), 「한국 지방세제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 현진권(1999), “조세행정의 개혁방향과 정책과제”, 「조세행정과 정책과제 논문집 98-1」 한국조세연구원.
- 홍세희(2008),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교육과학사.
- 행정자치부(2000), 「토지세제의 연구」,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2000), 「지방세의 이론과 과제」,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2000), 「조세구조의 이론과 과제」,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2006), 「2006지방세담당공무원교재」, 행정자치부.

2. 논 문

- 고은경(2001), “납세자의 납세불순응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민훈(1997), “세법상 납세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열(2007),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제인지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완석(2006), “조세법 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김진황(1993), “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행태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997). “납세자 순응연구의 문헌적 고찰”, *부경대 논문집*, pp.231-249.
- 권영모(1994), “납세자의 조세공평 성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기원(2001), “납세자의 세제인지도가 성실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광주(2008), “부동산 양도인의 세제인지도가 성실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명호, 심태섭(2008),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무회계와 저널* 제9권제4호, 한국세무학회, pp.55-84.
- 변용환(1995), “조세공평성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기준 : 다차원 모형을 이용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심석무(2002), “납세자의 세제인지도와 조세회피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경영연구소* 제17집, pp.130-132.
- 신용대(2008), “전자상거래 관련 세제의 인지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조세결정자, 기업, 소비자)”,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형환(1993), “조세회피와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여용범(2006), “부동산중개업자의 납세의식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시영(1993), “조세회피 의사결정 요소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양현외(1997),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세무학 연구*(제9호), pp.73-79.
- 이우운(1996), “납세자의 조세포탈 성향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박사학위
논문.
- 이종환(1992),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조세연구소(1988), “한국세정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p.132.
- 전태영, 변용환(2002), “국세행정에 대한 평가요인”, 한국세무학회, pp.35-58
- 정희상(2009), “부당신고 가산세율의 인상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정환(1996),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8호,
한국세무학회, pp.243-269.
- 최근주(2003), “납세자의 세제인지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성선(2009), “부동산 관련 지방세 납세의식 영향요인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제주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현진권 외(2002), “실험자료를 사용한 납세순응 행위의 실증분석”, *한국세무학회*,
pp.59-80.

3. 기 타

-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서울신문, 1973, 3.5자 5면
대한민국 관보, 제6648호(그2) 1974, 1.14, p.492.
지방세법편람, 한국지방세연구회, 2009.
제주통계연보, 2008.
제주도 결산서 및 보조자료, 2008.
행정안전부 지방세정 연감, 1998~2008.

4. 외국문헌

- Allingham, M. G., and Sandomo, A.(1972), "Income tax evasion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November, pp.323-338.
- Becker, G. S.(1967), "Crime and punishment :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ublic Economy*, Vol. 78, pp.526-536.
- Benjamini, Y. and Maital, S.(1985), "Optimal Tax Evasion and Optimal Tax Evasion Policy : Behavioural Aspects, in the Economics of the Shadow Economy, edited by W. Gaeatner and A. Wenig, Berlin : Springer-Verlag", pp.78-142.
- Chang, Nichols, O. H.and Schultz, J, J.(1987), "Taxpayer Attitudes towards Tax Audit Risk", *Journal Psychology* Vol. 8, pp.299-309.
- Christiansen, V.(1980), "Two Comments on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5, pp.389-393.
- Clotefelter, C. T.(1983), "Tax Evasion and Tax Rates : An Analysis of Individual Return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5, pp.363-373.
- Cox, D.(1984), " Raising Revenue in Underground Economy", *National Tax Journal* Vol. 37, No3, pp.283-288.
- Cross,R. .and Shaw, G.K.(1982), "The Economics of Tax Aversion", *Public Finance*, Vol.37, pp.36-47.
- Cowell, F. A.(1985), "Tax Evasion with Labor Incom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6, pp.19-34.
- Dean, P., Keenan, T. and Kenny, F.(1980), "Taxpayers' Attitudes to Income Tax Evasion : An Empirical Survey", *Birtish Tax Review*, pp.28-44.
- Ekstrand, I.(1980), "Factors Affecting Compliance Focus Group and Survey Results".
- Friedland, N., Maital, S., Rutenburg, A.(1978), "A simulation study of income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0, August, pp.107-116.

- Graetz, M. and Wild, L.(1985)," The Economics of Tax Compliance : Fact and Fantasy", *National Tax Journal*, Vol.38. No3, pp.355-363.
- Grasmick, H. and Scott, W.(1982), "Tax Evasion and Mechanisms of Social Control : A Comparison with Grand and Petty Thef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2, pp.213-230.
- Jackson, B., And Milliron, V.(1986)., "Tax compliance research : findings,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Spring, pp.125-165.
- Kaplan, S. E., Reckers, P. and Roark, S.(1988), "An Attribution Theory Analysis of Tax Evasion Related Judgement",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Vol. 14. No. 3, pp.371-379.
- Lewis, A.(1982), "An Empirical Assessment of Tax Mentality", *Public Finance* Vol. 34. No. 2, pp.245-257.
- Long S. B. and Swingen, J. A.(1987), "An Approach to the Measurement of Tax Law Complexity",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Spring), pp.22-36.
- Mason, R. and Calvin, L.D.(1984), "Public Confidence and Admitted Tax Evasion", *National Tax Journal*, Dec, pp.489-498.
- Mork, K. A.(1975), "Income Tax Evasion : Some Empirical Evidence", *Public Finance*, Vol. 30. No. 1, pp.70-75.
- Richupan, S.(1984), "Income tax Evasion : A Review of the Measurement Techniques and Some Estimates of the Developings", IMF, Fiscal Affairs Department, DM/84/46/, July, pp.78-101.
- Schwartz, R. and Orleans, S.(1967), "On legal Sanction",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Winter), pp.274-300.
- Song Y. D. and Yabrough, T. E.(1978), "Tax Ethics and Taxpayer Attitudes : A Surve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September-October, pp.442-452.
- Spicer, M. W.(1986), "Civilization at a Discount : The Problem of Tax Evasion", *National Tax Journal*, March, pp.13-20.

- Spicer, M.W. and Becker, L.A.(1980), "Fiscal Inequity and Tax Evasion ; An Experimental Approach", *National Tax Journal*, pp.171-175.
- Spicer M. W. and Thomas, J. E.(1982), "Audit Probabilities and the Tax Evasion Decision : An Experimental Approach, "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2, pp.241-245.
- Srinivasan, T. N.(1973), "Tax Evasion : A Mode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 pp.339-346.
- Vogel, J.(1974), "Taxation and Public Opinion in Sweden : An Interpretation of Recent Survey Data", *National Tax Journal*, Vol. 27, No.4, December. pp.499-513.
- Westat Inc.(1980), "Individual Income Tax Compliance Factors Study Qualitative Research", prepared for the Internal Revenue Service(February), pp.105-108.
- Witte, A. D. and Woodbury, D.F.(1983), "The Effect of Tax Laws Adimistation on Tax Compliance", working paper 83-1,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North Carolina, pp.41-87.
- Young, J. C.(1994), "Foctors Associated with Noncompliance : Evidence from the Michigan Tax Amnesty Program",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16, No, 2. pp.82-105.
- Yitzzhaki, S.(1974), "A Note on Income Tax Evasion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 pp.201-202.